

발 간 등 록 번 호
11-1130000-000174-01

2010

주요산업 경쟁정책보고서 시리즈 2010-1

www.ftc.go.kr

주류산업과 경쟁정책



공정거래위원회
FAIR TRADE COMMISSION

발 간 등 록 번 호
11-1130000-000174-01

2010

주요산업 경쟁정책보고서 시리즈 2010-1

www.ftc.go.kr

주류산업과 경쟁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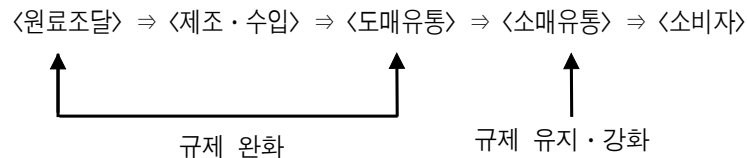
시장구조개선과 황태호·이강수



공정거래위원회
FAIR TRADE COMMISSION

(요 약)

- ◆ 주류산업은 그동안 주로 세수확보, 국민건강 및 청소년 보호 측면에서 다루어져 온 결과 원료조달, 제조, 수입, 유통 등 산업 전 과정에 걸쳐 정부규제가 과도한 상황
 - ◆ 주류분야도 이제 하나의 산업(Industry)으로 인식하여 산업의 발전과 경쟁력제고, 수요자의 선택폭 확대 등의 관점에서 규제를 대폭 정비할 필요
 - 최근 주세가 전체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폭 감소('60년대 약 10% → '09년 약 1.7%)하여 세수확보를 위한 규제의 당위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짐
 - ◆ 주류제조, 수입, 도매유통과정에서의 진입규제, 가격 및 사업활동제한 규제를 완화하여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촉진하고 경쟁이 활성화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
 - 최근의 막걸리산업 활성화는 탁주의 신규제조면허 허용('98년) 및 공급구역제한제도 폐지(2000년) 등 규제완화의 효과가 나타난 결과
 - 외국의 경우에도 규제완화로 주류산업의 경쟁력이 제고되어 세계 20대 식품기업 가운데 주류기업이 6개사*를 차지
- * AB인베브, 기린, SAB밀러, 아사히, 디아지오, 칼스버그
- ◆ 다만, 국민건강 및 청소년 보호 측면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유통분야의 규제는 유지 또는 강화할 필요
 - * 미국, 캐나다, 영국 등 선진국의 경우 주류산업의 규제는 주류제조부문보다는 주류 오남용 방지 및 청소년 음주 예방을 위해 주류 판매장소와 시간을 제한하는 등 소매유통부문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I. 주류산업 개요

- 주류는 주정과 알콜도수 1도 이상의 음료를 말하며, 주세법에 의하여 주정, 발효주류, 증류주류, 기타주류로 구분(주세법 제3조 및 제4조)
- 주류산업은 전국적인 유통망 구축비용과 초기설비투자비용이 과도하게 소요되므로 진입장벽이 높은 수준
 - 조세수입에서 주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아 정부규제가 많고, 경기변동과 계절에 따라 수요가 변화하는 특성

II. 주류산업의 시장구조 및 경쟁현황

- '09년 전체 주류시장규모는 7조 7,687억원*이며, 맥주, 소주, 주정, 위스키 등 4대 주종의 출고액(7조 1,090억원)이 약 92% 차지
 - * '08년 7조 7,160억원에 비해 0.7% 증가한 수준
- (맥주) 주류산업 중 가장 큰 규모로 현재 하이트맥주(주)(58.2%)와 오비맥주(주)(41.8%) 2개사의 독점구조임
- (소주) 10개 제조사 중에서 (주)진로(51%)를 비롯한 상위 6개 업체가 전체 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 지역을 기반으로 사업영위
 - * (주)금복주-대구경북, 대선주조(주)-부산, (주)무학-경남, 보해양조(주)-전남 등
- (주정) 10개 주정생산업체가 있으나, 매년 주류산업협회와 국세청에 의해 원료배정과 생산량이 결정되므로 주정업체간 경쟁이 제한
 - * (주)진로발효(17%), (주)창해에탄올(15%)을 제외한 기타 업체의 점유율은 5~10% 내외
- (탁주) 서울탁주(53%)와 (주)국순당(13%)이 전체 시장의 66% 내외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업체는 지역을 기반으로 영세한 규모

- * 전국의 막걸리 제조면허 보유업체는 770여개(실제로 '09년 533개 업체가 생산)
- * '10.4월 현재 막걸리 내수량(2만 8,830kl)은 전체 주류내수량(28만 5,749kl)의 10.1% 수준으로 전년도의 4.5% 수준에서 크게 증가
- (유통구조) 주류는 판매단계별로 면허제도를 채택하여 원칙적으로 제조 → 도매 → 소매 → 소비자의 유통단계를 거침
- * 주류판매업은 크게 주류도매업(5개종)과 주류소매업(2개종)으로 구분
- * 주류는 용도별(가정용, 할인매장용, 유흥음식점용, 주세면세용)로 판매 하도록 하고, 용도에 따라 유통단계를 구분(유흥음식점용 주류는 종합 주류도매업자만 공급 가능)

Ⅲ. 경쟁촉진을 위한 규제개선 과제

① 주류제조업 제조시설기준 완화

- (현행) 주류제조업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주종별로 일정한 제조시설을 갖추도록 제한(주세법 §6 및 주세법 시행령 별표 3)
- 제조시설 기준이 과도하게 높게 설정되어 신규진입을 저해
 - * 특히 대중주(맥주, 소주)의 제조시설요건이 과도하여 중소기업체의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다양한 주류의 생산 곤란

【주종별 제조시설 기준 현황】

구 분	주정	탁주 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	희석식 소주	증류식 소주
시설기준 (발효조)	550 kl 이상	3 kl 이상	6 kl 이상	1,850 kl 이상	21 kl 이상	130 kl 이상	6 kl 이상
술병환산치 (병)	-	4,300 /700ml	18,000 /330ml	3,700,000 /500ml	28,000 /750ml	360,000 /360ml	10,000 /600ml

□ (개선방안) 주류 제조시설 용량기준(발효조)을 대폭 완화할 필요(예: 맥주, 희석식 소주 각각 60kl 이상)

○ 주류 제조시설 용량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방침 결정('09.9.29, 제 17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 탁주·약주의 제조시설기준(발효조)은 '10.2.18일 완화하였음 : 6kl 이상 ⇒ 3kl 이상

② 주류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 확대

□ (현행)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납세병마개 제조시설을 갖춘 자를 납세 병마개 제조자로 지정(주세사무처리규정 §110)

○ 삼화왕관(주)('72년)와 세왕금속공업(주)('85년)가 납세병마개 제조자로 지정되어 2개 업체가 38년 동안 안정적인 독점이윤을 향유

* '09년 납세병마개 시장규모는 698억원

○ 양사가 장기간 시장을 분할*함으로써 고객확보경쟁이 전혀 없고, 초과이윤을 R&D나 기술개발 등에 투자할 유인이 없음

* 삼화왕관(주)(오비맥주, 진로 등), 세왕금속공업(주)(하이트, 롯데주류 등)

□ (개선 추진현황) 주류납세병마개 지정요건 완화 및 제조자 지정 확대 추진

○ 주류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을 확대하기로 방침 결정('09.9.29, 제17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 주류납세병마개 제조업체로 CSI코리아(주)를 신규 추가 지정('10.6.22)

* '10.7.1일부터 주류납세병마개시장이 기존의 2사 독과점체제에서 3사 경쟁체제로 전환

□ (향후계획) 납세병마개 제조업체 추가 지정 이후 탈세 등의 부작용여부를 평가하여 지정확대여부 결정('11년)

③ 주정원료 및 생산량 배정제 개선

- (현행) 국세청장이 매년 주정제조업체별로 주정생산량 및 주정의 국산 원료(정부미, 보리, 고구마 등) 사용량을 업계와 협의하여 결정
 - * 주정은 국산원료와 수입원료(타피오카)로 제조되는 발효주정과 수입 조주정으로 제조되는 정제주정으로 구분
 - * '08년도 발효주정 원료사용 비중 : 국산원료(54.3%), 수입원료(45.7%)
- 주정원료 및 생산량을 정부가 정해줌으로써 사업자의 핵심적인 사업 활동내용을 제한하고, 업체간의 자율경쟁을 저해
 - * (원료배정) 각 주정회사의 발효·정제주정 점유비율에 따라 배정 (생산량배정) 전년실적을 기준으로 증감되는 양에 대해 20%는 균등 배분하고 80%는 비율배분
- (개선방안) 주정원료 및 생산량 배정제의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1단계) 주정회사별 주정생산량 배정제도는 폐지하되, 국산원료 배정 제도 및 국산원료 배정과 연계한 수입 조주정 배정제도는 현행 체계 유지
 - 주정업체는 수입원료(타피오카)를 이용한 발효주정의 생산량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주정업체 간 경쟁 활성화
 - * 국산원료 배정제도를 유지함으로써 농민소득 보장을 지속적으로 유지
 - 다만, 일부 주류에 주정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등 주정남용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 국가차원의 주정관리가 필요하므로 규제개선에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음
 - (2단계) 중국과의 FTA체결 등 농산물 개방 여건변화 등에 맞춰 국산 원료 배정제도의 폐지를 중장기적으로 검토

④ 주정가격 신고제 개선

- ☐ (현행) 주정의 출고가격 또는 판매가격의 변경을 국세청장에게 신고시 제조(판매)원가계산서와 소관 주류업단체장의 출고(판매)가격에 대한 검토의견서 등을 제출토록 함(주세사무처리규정 §65)
 - 사업자단체가 주정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사업자단체를 통해 주류업체간 가격경쟁을 제한할 우려
- ☐ (개선방안) 주류업단체장의 검토의견 첨부제도를 폐지하거나 객관성 있는 전문연구기관 등의 검토의견을 첨부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

⑤ 주류의 첨가물료 사용제한 완화

- ☐ (현행) 주류제조에 필요한 첨가물의 허용품목을 열거하여 첨가물의 임의 사용을 금지(주세법시행령 §2)
 - 탁주의 경우 첨가할 수 있는 재료를 당분, 과실, 자일리톨 등 15가지로 한정하고 있으며, 당분의 경우 설탕, 포도당, 엿류, 꿀 등 7가지의 첨가물료로 한정
 - 첨가물료의 사용제한은 소비자의 기호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주류의 개발 및 주질향상을 저해
- ☐ (개선방안) 사용가능한 첨가물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
 - 천마, 옷, 음양곽(삼지구엽초) 등 한방약재의 첨가 허용 검토

⑥ 막걸리 취급 및 판매용기 제한 완화

- ☐ (현행) i) 종합주류도매업자의 일반탁주(생막걸리) 취급을 금지(주세사무처리규정 §69)하고, ii) 막걸리 판매용기의 크기를 2ℓ 이하로 제한(주류의 제조, 저장, 이동, 원료, 설비 및 가격에 관한 명령위임고시)
 - 일반탁주의 취급이 가능한 특정주류도매업자는 대형제조사의 특정제품만을 전문으로 취급함으로써 신규제조사 제품의 유통 활성화가 곤란

- * 종합주류도매업자는 주정을 제외한 모든 주류를 취급할 수 있는 도매업자로 서울종합주류 등 전국에 1,196개 면허업체가 활동 중
- * 특정주류도매업자는 탁주, 약주, 농민주, 민속주 등만을 한정하여 취급할 수 있는 도매업자로 안양합판장 등 전국에 1,512개 면허업체가 활동 중

- 용기제한으로 포장·물류비용이 많이 소요되며, 대용량의 막걸리를 선호하는 소비자의 선택권 제약

□ (개선방안) 유통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막걸리 유통을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

- i) 종합주류도매업자의 일반탁주 취급을 허용
 - 일반탁주의 유통경로가 다양해짐에 따라 유통업체간 경쟁촉진 및 신규 탁주제조사의 판로가 확대
- ii) 막걸리 판매용기 크기 제한을 완화(예: 2ℓ 이하 ⇒ 10ℓ 이하)
 - 대용량의 막걸리 유통으로 포장·물류비용 절감 및 다양한 용량의 막걸리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

⑦ 종합주류도매업 면허기준 및 면허 수 제한 완화

□ (현행) i)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 자본금 및 창고 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주세법 시행령 §9 별표 5*), ii)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수를 해당지역(시, 군)의 인구 수, 주류소비량 및 판매장 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한(주세법 §10)

- * 인구 50만 이상 시: 자본금(1억원), 창고(165m²) / 기타: 자본금(5천만원), 창고(66m²)
- 일부 필요 이상 규모의 시설 및 자본금 요건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소규모 업체의 신규 진입이 곤란
- 면허수 제한제도는 주류도매업 시장으로의 신규진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진입장벽으로 작용

☐ (개선방안) 종합주류도매업 면허기준을 최소한의 수준(예: 자본금 5천만원, 창고시설 66㎡)으로 완화할 필요

* 종합주류도매업 면허기준을 완화하기로 방침 결정('09.9.29, 제17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 아울러 종합주류도매업 지역별 면허 수 제한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⑧ 소주출고가격 변경에 대한 사전 행정지도 개선

☐ (현행) 국세청은 특정업체의 소주 출고가격 인상률 등에 대해 행정지도를 통해 사전에 승인

○ 이는 주류출고가격에 대하여 사전신고제에서 사후신고제로 변경한 규제개혁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 주류출고가격 신고방식은 '99년까지 사전신고(변경일 2일 전까지 신고) 방식이었으나,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의해 1999.9.1.자로 사후신고(변경 후 2일 이내 신고) 방식으로 변경

○ 주류제조업체의 가격결정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며, 주류제조업체의 담합을 야기할 가능성

☐ (개선방안) 소주출고가격 변경시 행정지도는 주세보전상 필요한 최소한 범위내에서 사후적·제한적으로 실시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

⑨ 주류의 유통 기한표시 등 소비자 정보제공 확대

☐ (현행) 주류유통과정에서 유통기한 미비 등으로 변질된 주류를 음용함으로써 소비자 위해사례가 빈번하게 발생

* 한국소비자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05~'07년까지 맥주피해사례 161건 중 변질에 따른 부작용(장염, 구토, 복통, 설사 등)이 61건(37.9%)

○ 주류의 원료 함량, 원산지 표시, 첨가재료 명칭 표시 등의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도 미흡

- (개선 추진현황) 유통기한 표시 등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
 - 주류의 유통기한 표시 및 주류의 원료 함량, 원산지 표시, 첨가재료 명칭 표시 등을 법적 의무화
 - * 맥주, 탁주, 약주의 경우에는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선택), 주류의 원료 명칭 및 원료 함량, 원산지, 첨가재료 명칭 등의 표시를 의무화('10.7.1. 시행)

❧ 목 차 ❧

I. 주류산업 개요	1
1. 주류산업의 범위	1
2.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4
3. 주류산업의 특징	5
II. 주류산업의 경쟁현황	8
1. 시장현황	8
가. 주류별 시장규모	8
나. 국내주류 출고량의 연도별 변화추이	9
다. 수입주류 출고량의 연도별 변화추이	11
라. 전통주 출고량의 연도별 변화추이	12
2. 주류산업 시장구조 및 경쟁상황	13
가. 주정시장	13
나. 맥주시장	20
다. 소주시장	25
라. 위스키시장	30
마. 와인시장	33
바. 기타 주류시장	34
사. 주류납세병마개 시장	35

3. 주류산업의 수익성	37
4. 주류산업의 유통구조	38
가. 주류제조업의 면허 및 관리	38
나. 주류판매업의 면허 및 관리	39
다. 주류유통 구조	43
라. 외국사례	47
 Ⅲ. 정부규제 현황	49
1. 주류관련 정부규제 현황	49
가. 주류제조 및 판매의 면허요건	49
나. 주정도매업 면허제도	50
다. 주정의 가격신고제도	50
라. 주류원료용 주정 구매 사전승인	50
마. 주정생산량 및 원료 배정제도	51
바.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	51
사. 주류의 통신판매 제한	51
아. 주류과세체계	52
자. 주류도수규제	53
2. 규제개혁 동향	54
가. 그간의 추진경과	54
나. 주류분야 공정위의 규제개선 실적	56

IV. 해외사례	59
1. 미국의 주류제조 및 판매면허제도	59
2. 영국의 주류제조 및 판매면허제도	60
3. 일본의 주류제조 및 판매면허제도	61
4. 캐나다의 주류제조 및 판매면허제도	63
5. 프랑스의 주류제조 및 판매면허제도	64
6. 주요 국가들의 주류산업 규제현황	65
7. 규제완화를 통한 주류산업 육성사례	67
 V. 경쟁 및 소비자이슈 도출	72
1. 경쟁촉진을 위한 규제개선 과제	72
< 진입 규제 >	
가. 주류제조업 제조시설기준 완화	72
나. 종합주류도매업 면허기준 및 면허 수 제한 완화	73
다. 주류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 확대	74
 < 사업활동제한 규제 >	
가. 주류의 첨가물료 사용 제한 완화	76
나. 주정가격 신고제 개선	76
다. 주정원료 및 생산량 배정제 개선	77
라. 소주출고가격 변경에 대한 사전 행정지도 개선	78
마. 주류제조자의 직접 주정구입시 사전승인제 개선	79

바. 막걸리 취급 및 판매용기 제한 완화	80
2. 사업자의 경쟁제한행위 유형	81
가. 개요	81
나. 주요 심결사례 분석	82
3. 소비자 보호 이슈	84
가. 소비자피해 청구현황	84
나. 주요 소비자 이슈	85
〈참고 1〉 한국주류산업의 발전과 주류정책 변화	88
〈참고 2〉 주류 제조면허를 위한 일반적 시설기준	91
〈참고 3〉 소규모 맥주제조자의 제조장 시설기준	93
〈참고 4〉 소규모 맥주제조장 현황 : 지역별 면허 현황	93
〈참고 5〉 주류 제조면허 추이	94
참고문헌	95

표 차례

<표 1> 소주의 종류	2
<표 2> 주류의 구분(주세법 제4조)	3
<표 3> 정부규제 현황	5
<표 4> 주류별 시장규모의 변화추이	8
<표 5> 주류별 출고량의 연도별 변화추이	9
<표 6> 수입주류별 출고량의 연도별 변화추이	11
<표 7> 수입주류가 차지하는 비중의 연도별 변화추이	12
<표 8> 주정의 분류와 특징	13
<표 9> 주정의 용도별 사용 현황	13
<표 10> 소주 및 주정 출고실적 변화추이	14
<표 11> 소주회사별 주정 구입 현황	14
<표 12> 주정시장 시장점유율 추이	15
<표 13> 주정가격 변동 내역	16
<표 14> 주정생산 원료의 국산 비율(2007년)	17
<표 15> 주정원료 변동 내역	17
<표 16> 맥주의 종류	21
<표 17> 맥주시장 시장점유율 추이	23
<표 18> 증류식 소주와 희석식 소주 비교	25
<표 19> 소주시장 시장점유율 추이	27
<표 20> 소주업체별 주요 판매지역 시장점유율 현황(2008년)	28

<표 21> 몰트위스키와 그레이위스키 비교	30
<표 22> 위스키 종류별 특성	31
<표 23> 위스키시장 시장점유율 추이	32
<표 24> 국내 와인시장 현황(2008년)	34
<표 25> 기타주류 출고량 추이	35
<표 26> 기타주류 시장점유율 현황(2007년)	35
<표 27> 주류납세병마개 제조업체 현황	37
<표 28> 주류산업 수익성 지표 추이	37
<표 29> 주류제조장의 시설기준(발효조 총용량기준)	39
<표 30> 주류판매업 종류 및 주요 내용	40
<표 31> 주류판매업의 종류별 면허요건	41
<표 32> 주류판매업 면허 현황	43
<표 33> 2008년 용도별 주류판매현황	45
<표 34> 우리나라 주세현황	52
<표 35> 주류도수규제 현황	53
<표 36> 주류규제개혁 세부내용('88년)	54
<표 37> 주류규제개혁 세부내용('97~'98년)	55
<표 38> 주류분야 공정위 규제개선 실적현황	56
<표 39> 미국의 주류제조시설 기준	59
<표 40> 영국의 주류면허 현황	61
<표 41> 면허법 2003의 주요 내용	61
<표 42> 일본의 주류 종류별 생산실태	63

<표 43> 프랑스 소매면허의 종류	64
<표 44> 해외 주류규제현황	65
<표 45> 해외 주정관리제도 현황	66
<표 46> 독일·스위스의 주정관리제도 현황	66
<표 47> 일본의 주류 종류별 최저생산량 및 세율	68
<표 48> 독일의 맥주산업현황	71
<표 49> 주류별 제조시설 기준 현황	72
<표 50> 일본의 주종별 최저 생산량 기준 현황	73
<표 51> 주요 주정업체의 대한주정판매(주) 공급가격	77
<표 52> 2008년도 발효주정 원료 사용량	77
<표 53> '04년 이후 공정위 조치실적(경고 이상)	81
<표 54> 최근 3년간 주류관련 피해구제 접수현황	84
<표 55> 피해유형별 현황	85
<표 56> 외국의 맥주 유통기한 표시실태 현황	85
<표 57> 맥주관련 위해실태(2007년)	86

그림 차례

<그림 1> 주류산업의 국민경제상 지위	4
<그림 2> 주요 주류출하량 및 경제성장률 추이	6
<그림 3> 일반주류의 유통구조	7
<그림 4> 주정의 유통구조	19
<그림 5> 발효주정과 정제주정의 제조공정	20
<그림 6> 브랜드별 맥주시장 점유율 추이	22
<그림 7> 맥주 제조공정	23
<그림 8> 소주시장 점유율 추이	29
<그림 9> 소주 제조공정	30
<그림 10> 위스키 제조공정	33
<그림 11> 주류납세병마개 공급체계	36
<그림 12> 주류제조면허 취득절차	38
<그림 13> 주류도매면허 취득절차	40
<그림 14> 전체 주류 유통구조	44
<그림 15> 소주 유통단계별 거래가격	44
<그림 16> 일반주류의 유통구조	45
<그림 17> 특정주류의 유통구조	46
<그림 18> 수입주류의 유통구조	46
<그림 19> 주정 유통구조	47
<그림 20> 수질개선부담금 납부증명체계	75

I. 주류산업 개요

1. 주류산업의 범위

- 주류는 주정과 알콜도수 1도 이상의 음료를 말하며, 주세법에 의하여 주정, 발효주류, 증류주류, 기타주류로 구분(주세법 제3조 및 제4조)
 - 주정은 곡물 등 전분질 원료와 당밀 등 당질원료를 발효 후 알콜 85도 이상으로 증류하여 생산하고, 에틸알콜(또는 에탄올)이라고 함
 - 주정생산에 투입되는 원료에 따라 발효주정과 정제주정으로 구분
 - * 발효주정의 원료는 국산원료(쌀수입의무물량, 겉보리, 절감 등)와 타피오카임
 - * 정제주정의 원료는 조주정(타피오카가 주원료로 정제가 덜된 주정)과 수입주정임

[주정원료의 종류]

- 전분질 원료
 - 곡류(쌀, 보리, 밀, 옥수수)와 서류(타피오카, 고구마 등)로 구분하고, 원료에 따라 60~85%의 전분질을 함유(고구마는 20~25%)
 - 발효주정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분쇄, 당화 등의 전처리가 필요
 - 국내 발효주정 원료는 타피오카를 80% 이상 사용하고, 동남아(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등)에서 수입
- 당질 원료
 - 주로 설탕제조 부산물인 당밀을 사용하고 그 외 사탕수수, 사탕무 및 원당이 사용되며, 보통 50%의 전당을 함유
 - 당화과정이 없어 발효설비나 작업이 간단하며, 주생산지는 쿠바, 아르헨티나, 중국, 인도,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등
- 섬유질 원료
 - 목재 및 농산물 폐기물 등의 섬유소를 이용하여 가격이 저렴하고 원료가 풍부하나, 강산 및 고압 하에서 당화가 필요하며 아직 상업적 생산이 어려움

* 출처 : 대한주정판매(주)

- 발효주류는 탁주, 약주, 청주, 맥주, 과일주로 구분
- 증류주류는 증류식 소주, 희석식 소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증류주, 리큐르(Liqueur)로 구분
 - * 용해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분말상태의 것을 포함하나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으로서 알콜분 6도 미만의 것은 제외
- 주류산업은 영위업종, 제품별 특성, 고객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주정, 소주, 맥주, 위스키, 기타주류시장으로 구분
 - 소주는 곡류를 발효시켜 증류(증류식)하거나, 주정을 물로 희석하여 만든 술(희석식)로 구분

<표 1> 소주의 종류

구분	증류식소주	희석식소주
원료	전분이 함유된 물료(쌀포함)	주정: 쌀보리, 보리쌀, 고구마, 타피오 카를 발효시켜 증류한 것 첨가물료 : 사탕, 구연산 등
알콜도수	30도 이상	35도 이하
증류방법	재래식 증류방법인 단식 증류기로 알콜 추출	현대식 증류방법인 연속식 증류기로 95% 농도로 추출한 양질의 알콜을 물 로 희석한 것

- 맥주는 맥아·홉 등을 원료로 하며 알콜도수가 4~5도이며, 제품의 제조방법 및 재료에 따라 라거맥주, 프리미엄 맥주, 드라이맥주, 비열처리 맥주 등으로 구분
- 위스키는 몰트·그레인 등을 원료로 하며 알콜도수는 40도이며, 원료에 따라 발아시킨 대맥만으로 제조한 몰트(molt: 맥아)위스키와 발아시키지 않은 대맥, 호맥, 소맥, 옥수수 등에 맥아를 첨가하여 당화시켜 만든 그레인(grain)위스키로 구분
- 청주, 약주 등은 알콜도수가 10~15도이며, 과일주, 리큐르 등과 함께 기타주류로 분류
- 와인은 국내 소비량의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으며, 일반 과일주 보다 고가로 소비자 선호도 등에 차이가 있어 별도 시장으로 구분할 필요

-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주류산업은 제조업 분야 중 음료 제조업-알콜음료 제조업에 포함되며, 알콜음료 제조업 중 발효주 제조업,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에 해당

<표 2> 주류의 구분(주세법 제4조)

주 종	세 부 내 용
1. 주 정	○ 전분 또는 당분이 포함되어 있는 물료를 발효시켜 85도 이상으로 증류한 것
2. 발효주류	
가. 탁 주	○ 곡류(곡류 외의 전분)와 국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지 아니하고 혼탁하게 제성한 것
나. 약 주	○ 곡류(곡류 외의 전분)와 국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제성한 것
다. 청 주	○ 곡류 중 쌀(잡쌀)·국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제성한 것
라. 맥 주	○ 엿기름·홥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제성하거나 여과·제성하는 것
마. 과일주	○ 과일(과실즙, 건조과실) 또는 과실을 물과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제성하거나,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 과실을 주된 원료로 하여 당분과 물을 혼합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제성하거나 나무통에 넣어 저장할 것
3. 증류주	
가. 소 주	
(1) 증류식소주	○ 전분이 포함된 물료, 국과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증류한 것
(2) 희석식소주	○ 주정 또는 곡물 주정을 물로 희석한 것
나. 위스키	○ 발아(맥아)된 곡류와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증류하여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다. 브랜디	○ 과일주(포도 등)를 증류하여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라. 일반증류주	○ 곡류, 전분, 설탕 등이 포함된 물료를 발효시켜 증류한 것
마. 리큐르(Liqueur)	○ 증류주나 알콜에 과일, 약초, 향초, 종자류 등의 추출물이나 당류, 향료, 색소로 배합하여 취향이 다른 술로 한 주류
4. 기타주류	○ 위에 열거한 주류이외의 것 (예) 과하주, 미림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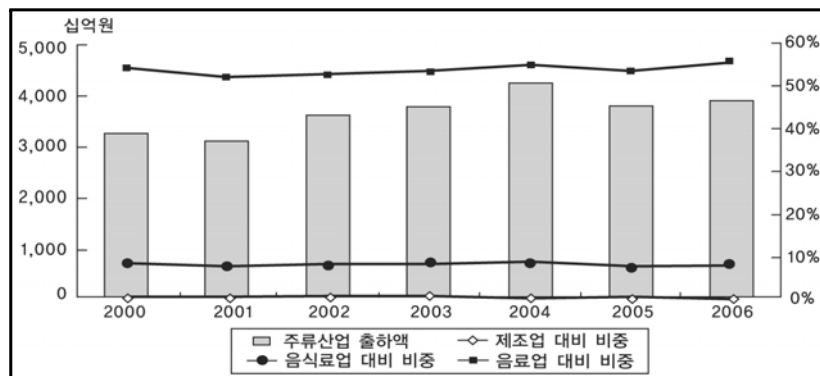
* 주류는 발효액 제조방법에 따라 양조주, 증류주, 제재주로도 구분 가능

- 증류주 : 발효액을 증류하여 빚은 술(소주, 고량주, 위스키, 보드카)
- 양조주 : 발효액을 그대로 또는 여과해 빚은 술(맥주, 탁주, 양주, 포도주, 청주)
- 제재주 : 양조·증류주를 원료로 알콜, 당분, 향료 등을 혼합한 술(매실주)

2.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 국내 주류산업이 전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출하액 기준 0.4~0.6%로 미미한 수준이나, 음·식료업에서의 비중은 출하액과 부가가치가 각각 8%, 13% 수준으로 높은 편임
- 특히, 음료산업에서 주류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출하액 및 부가가치 모두 50%를 상회하는 등 비알콜성음료보다 높게 나타남

<그림 1> 주류산업의 국민경제상 지위



* 출처 : 한국기업평가(2008)

- '60년대에는 우리나라 전체 국세의 약 10%를 주세가 차지하는 등 국가 경제의 중요한 몫을 담당하였으나 이후 점차적으로 감소하여 '09년 기준으로 주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7%임
- 산업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해마다 주세총액은 늘어났으나 '09년말 기준 전체 조세(164.5조원)에서 주세(2.8조원)가 차지하는 비율은 1.7%로 줄어들

3. 주류산업의 특징¹⁾

□ 높은 시장진입장벽이 존재

- 주류산업은 전국적인 유통망 구축비용과 초기 설비투자비용(특히 맥주)이 과도하게 소요되므로 진입장벽이 높은 수준
- 특히, 기업의 브랜드이미지가 소비자의 제품구매에 영향을 미쳐 시장 진입 후 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위한 광고비 투입 등의 부담이 큼

□ 각종 정부규제가 다수 존재

- 주류가 조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기 때문에 세수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원료, 판매가, 세율 전반에 걸쳐 각종 규제가 존재
- 주류 관련 정책의 변경(예 : 주세율 변경, 유통업소 영업시간 조정, 음주운전 강화 등)에 따라 주류 수요에 막대한 영향을 미침

* 주류소비에 부과되는 세율은 여타 세율에 비해 고율인 관계로 주류제품의 가격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특성이 있어 정부규제에 상당히 민감

<표 3> 정부규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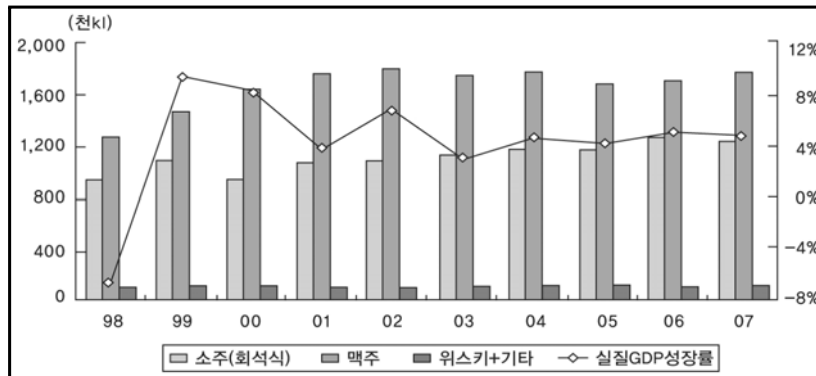
구 분	규 제 내 용
사업자 진입규제	○ 주류제조 및 주류판매업 면허제도 ○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
시장가격규제	○ 주정 제조장 출고가격 신고 ○ 주정 판매장 판매가격 신고 ○ 주정 이외의 주류 제조장 출고가격 신고
사업활동규제	○ 주류제조장 및 판매장 이전 신고 ○ 주정생산량 및 원료 배정제도 ○ 주류제조업자의 주정 구매 사전 승인 ○ 주류 구입 및 판매대상 제한 ○ 주류첨가물 제한 및 주류제조방법 등 승인

1) Industry Report [한국신용평가정보 (2009)]와 산업별 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 (2008)] 중 주류산업의 특성 부분을 주로 인용

□ 경기변동 및 계절에 따른 수요 변화

- 주류는 필수재 성격이 강한 타 음·식료품과는 달리 기호품적 성격이 강해경기변화에 따른 수요탄력성이 높은 편임
- * 특히, 위스키는 경기민감도가 매우 높은 수준이며 소주는 저가주·국민주 등의 성격을 지니므로 타 주류에 비해 경기민감도가 낮은 편임
- 주류는 계절적 영향을 많이 받아 여름에는 맥주 등 저도주, 겨울에는 소주, 위스키 등 고도주의 소비가 증가

<그림 2> 주요 주류출하량 및 경제성장률 추이



* 출처 : 통계청, 한국주류산업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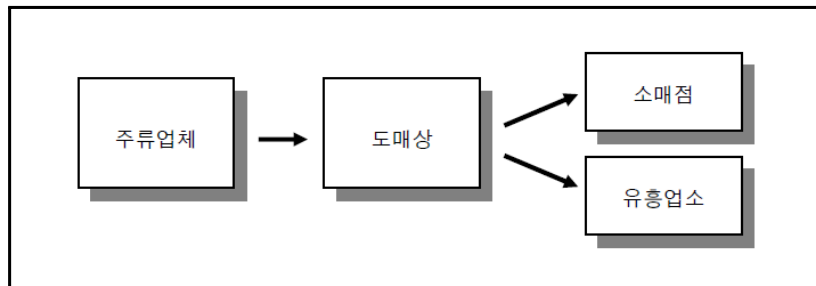
□ 정부통제가 높은 수준이었으나 최근 제도가 변화되는 추세

- 국내 주류산업은 그동안 정부의 제도적 통제와 보호 장치 속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세를 기록하여 왔으나 최근 주류시장의 완전개방, 자도주판매제도 폐지 등 제도적 변화가 발생
- 주류시장이 성숙기에 진입하고, 소비자 기호의 다양화 및 저도주 선호 경향 등 비제도적 변화가 함께 진행됨에 따라 주류산업의 시장 환경과 경쟁구도에 변동이 발생

□ 유통망 관리능력이 주류업체 경쟁력과 직결

- 국내 주류생산업체는 주류제조면허만 보유할 수 있어 제도적으로 최종소비자에 대한 직접 판매는 불가능
- 주류유통은 유통면허를 가진 주류 도·소매상 위주로만 이루어지므로 주류제조업체의 유통망 관리능력이 경쟁력의 관건임

<그림 3> 일반주류의 유통구조



□ 일부 주류는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영업 활동

- 소주의 원료인 주정제조업체(10개)가 전국 각 지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고, 과거 자도주판매제도로 인해 지역대표 소주제조업체가 존재
- 특히, 보해양조(주) 등 일부 대형 소주제조기업들은 주정제조기업과 수직적 계열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임

II. 주류산업의 경쟁현황

1. 시장현황

가. 주류별 시장규모

- '09년 전체 주류시장규모는 7조 3,587억원으로 맥주, 소주, 주정, 위스키 등 4대 주종의 출고액이 약 97%(7조 1,090억원)를 차지²⁾
- '09년의 경우 웰빙 트렌드 확산, 신종플루로 인한 각종 행사 및 모임 등이 줄면서 전년도에 비해 전체 술소비가 다소 감소
 - 전년도에 비해 '09년 기준 맥주(1.2%), 청주(2.2%)는 소폭 증가
 - 반면, 국산양주(-34.5%), 과실주(-10.4%)는 전년에 비해 소비가 대폭 감소하였고, 소주(-0.9%)는 소폭 감소

<표 4> 주류별 시장규모의 변화추이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전체	6,943,949	6,945,157	7,272,132	7,529,739	7,358,701
맥주	3,293,945	3,164,121	3,314,134	3,557,429	3,598,994
소주	2,419,557	2,560,326	2,687,599	2,883,956	2,858,973
주정	364,513	395,041	407,584	431,458	441,152
양주	536,511	516,950	556,458	362,600	237,587
과실주·약주	213,675	198,886	197,952	188,478	113,129
청주	108,133	101,429	98,733	96,819	98,917
기타	7,615	8,404	9,672	8,999	9,949

* 출처 : 한국주류산업협회, 국내 수입주류 제외

2) 주류시장 규모에는 탁주의 출고액은 제외된 수치로, 탁주 포함시 '09년 전체 주류시장규모는 7조 7,687억원으로 추산됨

나. 국내주류 출고량의 연도별 변화추이

- 기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던 소주, 맥주의 출고량이 주춤하거나 증가폭이 크지 않은 반면, 탁주의 출고량은 '09년 들어 대폭 증가

<표 5> 주류별 출고량의 연도별 변화추이

(단위 : kℓ)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총 계	3,022,401	3,091,000	3,185,277	3,286,398	3,229,494
탁 주	166,319	170,165	172,342	176,398	260,694
약 주	45,033	42,873	33,288	27,374	22,116
청 주	21,512	19,909	19,164	17,860	18,517
맥 주	1,818,588	1,854,805	1,947,984	2,016,409	1,961,568
과 실 주	20,408	23,027	28,872	27,091	22,633
증류식소주	406	413	573	559	600
희석식소주	929,389	959,054	961,585	1,003,568	929,420
위 스 키	10,586	10,198	10,985	7,303	4,351
브 랜 디	8	8	2	10	50
일반증류주	6,312	6,675	7,214	7,191	6,998
리 큐 르	2,324	1,964	1,089	759	562
기 타	1,516	1,909	2,179	1,876	1,985

* 출처 : 국세청

- 소주시장은 자도주의무판매제도 변화 등에 따라 업체별 시장지위가 등락하는 양상을 보임

- (주)진로는 자도주의무판매제도 폐지로 점유율이 44%(91년) → 49%(95년) 상승하였다가 제도부활 이후 46%(96년)까지 하락하였으나, 2000년 들어 '참眞 이슬露'의 전국적 히트로 점유율이 상승

* 국내 소주시장은 진로를 중심으로 상위 6개 업체가 전체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진로와 롯데주류가 수도권시장을 석권

- 출고가격 인상('07년 5%인상) 등으로 소주소비량의 증가가 미미하다가 08년 해양 심층수 소주 등 신제품 출시 및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으로 소폭 증가하였으나 '09년에는 소폭 감소
- 맥주는 IMF 외환위기('98년) 당시 소비가 크게 감소하였다가 월드컵 특수가 있던 '02년까지 출고량이 증가
 - '02년 이후 경기둔화의 여파로 맥주 출고량은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06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09년에 소폭 감소
- 위스키 시장은 '04년 이후 무자로 접대비 한도 제한, 법인카드 접대비 상한제 시행 및 성매매방지법 발효 등으로 소비가 크게 위축
 - '08년 이후에는 건강을 중시하여 저도주를 선호하는 소비경향과 가정지향적 생활패턴, 경기침체 영향 등으로 인해 출고량이 감소
- 탁주의 경우 웰빙 트렌드 확산 및 경기악화로 저가 주류에 대한 수요 증대에 기인하여 소비가 급증
 - 탁주는 '05년 이후 소폭의 증가세를 보이다가 '09년에 대폭 증가(최근 5년간 5% 대의 주류시장점유율을 보이다가 '09년에는 7.8% 수준으로 증가)
- 기타주류는 대부분의 주종에서 출고량 감소
 - 과실주는 포도주와 복분자주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웰빙 트렌드가 확산됨에 따라 '07년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하다 이후 감소세 지속
 - 청주는 소주의 저도화와 명절음복주의 한정된 기능 등으로 판매 다각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감소세가 지속
 - 약주는 와인 등 과실주의 고성장, 소주의 저도화 등으로 인한 시장 잠식의 영향으로 '06년 이후 감소세가 지속
 - 리큐르(매실주, 칵테일, 인삼주 등)는 과실주 등 저도주와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감소세가 지속

- * 리큐르 세율은 70%로 과실주 세율(30%)보다 높아 매실주 등 일부 품목은 과실주로 주종을 변경

다. 수입주류 출고량의 연도별 변화추이

- 수입주류 소비시장의 성장속도가 매우 높은 수준
 - 주종별로 보면 맥주, 과실주 및 청주의 성장세가 두드러짐

<표 6> 수입주류별 출고량의 연도별 변화추이

(단위 : kℓ)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총 계	71,560	80,402	105,493	110,544	103,554
탁 주	0	0	0	0	7
약 주	0	0	0	0	0
청 주	539	729	1,148	1,436	2,296
맥 주	19,566	25,244	34,713	42,141	40,949
과 실 주	19,514	22,019	32,255	28,924	23,339
증류식소주	20	60	41	46	194
희석식소주	25	7	1,479	532	506
위 스 키	22,117	21,315	23,756	23,756	21,416
브 랜 디	1,412	1,483	1,624	1,340	1,165
일반증류주	2,902	2,656	3,110	3,243	6,495
리 큐 르	4,240	5,236	5,644	6,481	5,044
기 타	1,225	1,653	1,723	2,645	2,143

* 출처 : 국세청

- 전체 주류출고량에서 수입주류가 차지하는 비중은 07년 기준 3.25%로 매우 낮은 수준('09년 기준으로는 3.1% 수준으로 큰 차이는 없음)
 - 수입주류 중 소주와 맥주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0.12%, 2.66%로 매우 낮음
 - 그러나 양주와 과실주(와인 등)의 경우에는 301.53%, 173.87%로 수입주류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수준

<표 7> 수입주류가 차지하는 비중의 연도별 변화추이

(단위 : %)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소 주	0.02	0.00	0.01	0.02	0.00	0.00	0.01	0.12
맥 주	0.32	0.77	0.88	0.96	1.02	1.12	1.41	2.66
양 주	81.63	107.21	163.16	224.54	205.95	205.31	184.60	301.53
과실주	66.08	108.21	91.48	106.23	218.47	131.20	119.40	173.87
청 주	0.19	0.55	0.53	0.65	1.51	1.98	3.19	5.15
기 타	18.65	62.38	26.86	26.50	18.43	20.19	29.80	37.52
합 계	1.12	2.22	2.12	2.32	2.54	2.36	2.57	3.25

* 출처 : 국세청

라. 전통주 출고량의 연도별 변화추이

- 전통주* 출고량의 연평균 증가율은 29.75%로 2000년 이후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나, 전체 주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미미

* 민속주 :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문체부 및 시도지사가 추천 또는 농수산물가공업육성법에 의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추천한 주류

예) 금산인삼주, 가야곡왕주, 전주이강주 등

* 농민·생산자단체 주류 : 농·임업인 및 생산자단체가 생산하는 농산물을 주원료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생산되는 주류

예) 순창복분자영농조합, 사현포도영농조합 등

○ 과실주는 저도주 선호추세 및 웰빙트렌드 등으로 매우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 고도주인 증류식소주, 일반증류주 및 리큐르는 감소하는 추세

2. 주류산업 시장구조 및 경쟁상황

가. 주정시장

〈 주정시장 개요 〉

- 주정산업은 고구마, 감자 등 전분 또는 당분을 함유하는 원료를 발효·증류하여 술의 주성분인 주정을 생산하는 산업
- * 주정 : 전분질 또는 당질을 원료로 발효시킨 알콜 분을 85도 이상으로 증류시킨 것
- 주정은 발효주정과 정제주정으로 구분되며 발효주정은 맥아 등을 이용하여 당화시킨 것이고, 정제주정은 조주정을 증류시킨 것임

<표 8> 주정의 분류와 특징

구 분	주요 특징
발효주정	• 곡류 등의 전분질 원료에 맥아 등을 이용하여 당화시킨 후 발효과정을 통해 생성된 에탄올을 95도 이상으로 증류·정제한 것
정제주정	• 조주정을 증류시킨 것으로 외국에서 발효 및 1차 증류과정을 거쳐 국내에서 2차 증류과정을 거친 것

- 주정생산량의 90% 정도가 소주원료로 이용되고 있어 소주경기에 민감하며, 나머지 10%는 리큐르 등 기타주류·공업용으로 이용

<표 9> 주정의 용도별 사용 현황

(단위 : 천드럼)

		2004	2005	2006	2007	2008
주 류	소주	1,335	1,336	1,383	1,361	1,429
	청주	10	9	8	9	9
	기타주	30	33	35	40	38
	소계	1,375	1,378	1,426	1,410	1,476
비주류용		111	114	121	128	131
합계		1,486	1,492	1,547	1,538	1,607

* 출처 : 대한주정판매 주정통계연보

- 소주시장의 신제품 출시와 활발한 마케팅 활동, 베이징 올림픽 등의 특수와 경기침체에 따른 소주 소비증대 등으로 '09년 주정 출고량은 전년도에 비해 2.2% 증가
- 주정 출고량은 소주의 수요변화와 밀접하게 연관
- 최근 4년간('05~'08년) 소주의 연평균 출고 증가율은 3.26%이며 주정의 연평균 출고 증가율은 3.02%로 유사

<표 10> 소주 및 주정 출고실적 변화추이

(단위 : kℓ)

구 분	2005	2006	2007	2008
소 주	1,186,201	1,265,696	1,254,616	1,305,951
주 정	293,767	303,672	302,522	321,197

* 출처 : 한국주류산업협회

<표 11> 소주회사별 주정 구입 현황

(단위 : 드림)

구 분	2007	2008	점유율
(주)진로	672,470	724,335	50.68
(주)두산(현 롯데주류)	189,548	197,842	13.84
보해양조(주)	82,359	80,472	5.63
(주)금복주	117,888	117,864	8.25
(주)무학	100,300	104,465	7.31
대선주조(주)	104,415	104,650	7.32
(주)충북소주	18,165	18,145	1.27
(주)선양	41,855	44,360	3.10
(주)한라산	16,330	16,580	1.16
하이트주조(주)	18,107	20,533	1.44
합 계	1,361,437	1,429,246	100.0

* 출처 : 대한주정판매(주)

< 시장구조 및 경쟁상황 >

- '09년 기준 주정시장규모는 4,412억원으로 08년 4,315억원 보다 97억원 증가(2.2%↑)
- 현재 10개 업체가 주정 생산량을 분할하고 있으며, 진로발효(주)(17%)와 창해에탄올(주)(15%)을 제외한 기타업체의 점유율은 5~10% 내외
- 원료배정과 생산량이 매년 한국주류산업협회 및 국세청의 수급 계획에 의해 정해져 있어 주정업체간 시장점유율 변동이 적음

<표 12> 주정시장 시장점유율 추이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주)진로발효	61,679 (16.9)	67,276 (17.0)	68,432 (16.8)	73,165 (16.9)
(주)창해에탄올	54,101 (14.8)	58,874 (14.9)	60,107 (14.7)	64,458 (14.9)
일산실업(주)	43,398 (11.9)	43,398 (11.0)	47,620 (11.7)	46,380 (10.7)
서영주정(주)	38,760 (10.6)	42,236 (10.7)	43,117 (10.6)	45,968 (10.7)
풍국주정(주)	36,005 (9.9)	39,261 (9.9)	40,117 (9.8)	42,908 (9.9)
(주)MH에탄올	35,105 (9.6)	38,293 (9.7)	39,137 (9.6)	41,800 (9.7)
(주)롯데주류BG	27,974 (7.7)	30,480 (7.7)	31,247 (7.7)	33,686 (7.8)
서안주정(주)	23,597 (6.5)	25,738 (6.5)	26,582 (6.5)	28,216 (6.5)
한국알콜(주)	24,618 (6.8)	28,241 (7.1)	29,363 (7.2)	31,727 (7.4)
하이트주정(주)	19,366 (5.3)	21,244 (5.4)	21,862 (5.4)	23,230 (5.9)
합 계	364,513(100.0)	395,041(100.0)	407,584(100.0)	431,538(100.0)

* 출처 : 각사 감사보고서, 한국신용평가정보

- 주정의 판매단가는 매년 3% 수준의 인상률을 보이고 있고, 소주가격이 인상되면 주정가격도 함께 인상되는 경향을 보임
- * '07.5월 소주업체의 소주 출고가격 인상을 계기로 주정업체에서도 3% 수준의 가격인상을 단행
- * 08년의 경우에는 주정제조업자의 주정가격 인상 후, 소주 출고가격이 인상됨

<표 13> 주정가격 변동 내역

(단위 : 원/드럼)

구 분	구 매 가 격		판매가격
	발 효	정 제	
2001.2	267,954	143,814	223,239
2001.7	300,080	179,661	256,694
2002.1	312,995	193,942	269,155
2003.2	322,866	198,412	276,674
2004.5	343,105	204,314	290,776
2005.8	343,105	204,314	291,256
2006.3	351,870	231,300	307,679
2006.6	351,870	231,300	308,198
2007.5	361,950	240,179	318,448
2008.11	369,288	286,390	342,123
2008.12	369,288	286,390	342,729

* 출처 : 각사 감사보고서, 한국신용평가정보

- 특히, '07년 하반기 이후 국제 곡물가격 상승으로 타피오카, 조주정 등의 수입 원재료 가격이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어 원가상승 부담으로 작용
- 통상 주정 원재료 중 국내산과 수입산 투입비율은 20 : 80으로 수입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라 크게 영향받는 구조
- 국산원료의 가격이 수입 타피오카보다 보통 7~9배 정도 비싸기 때문에 국산원료와 수입원료의 사용비율에 따라 원재료 가격 부담이 결정되는 구조
- * 발효주정의 주원료인 쌀, 보리, 고구마, 타피오카 등은 전분질 원료이며 이 중 쌀, 보리, 고구마 등 국내산 농산물 원료는 국내 농민 보호라는 정책적 차원에서 배정에 따라 사용하며 수입 원료는 동남아 등을 통해 구입

- * 정제주정의 원료인 조주정은 배정량에 따라 수입해 사용하고, 수입주정은 MMA(Minimum Market Access: 최소시장접근)에 의한 물량으로서 주정회사를 통하여 수입되어 재증류 과정을 거쳐 판매됨

<표 14> 주정생산 원료의 국산 비율(2007년)

(단위 : 드럼)

구 분		수량 (톤)	생산량 (드럼)	금액 (백만원)	점유비(%)		
					원료 비율	국산비율	
						생산량	금액
국산 원료	소계	54,957	107,563	60,067	100.0	6.8	32.5
	쌀보리	42,000	83,233	46,200	77.4	-	-
	겉보리	11,000	20,158	12,100	18.7		
	고구마	1,796	3,861	1,598	3.6		
	우리밀	161	311	169	0.3		
외국산 원료	소계	329,215	747,367	124,747	100.0	93.2	67.5
	타피오카	79,215	181,619	15,843	12.3	-	-
	정부미 (현미)	250,000	565,748	37,500	38.4		
	조주정	151,924	725,070	71,404	49.2		

* 출처 : 한국주류산업협회

<표 15> 주정원료 변동 내역

시 기	원료작물	제도의 주요 내용
1945년 이후	곡류, 고구마	고구마를 주로 사용, 부패양곡
1952 - 61년	당밀	외국산 당밀 정책적 수입
1960년대 중반	고구마	정부의 고구마 전면 대체정책으로 고구마 전용을 국책으로 강력히 시행
1960년대 말	고구마, 당밀 병용	'66년 고구마 계약재배 중지이후 고구마 가격의 시가조정 인하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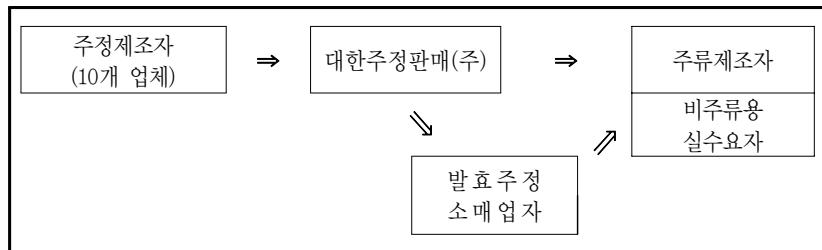
시 기	원료작물	제도의 주요 내용
1974년 이후	타피오카	'73년 주정파동 직전에 몰려서 타피오카를 대체원료로 수입
1970년대 말	조주정	장기적인 원료 확보방안으로 저렴한 조주정 수입
1983 - 88년	보리	보리의 주정원료계획을 세워 1988년까지 단계적으로 전량 대체하자는 계획을 세웠으나 수포로 돌아가고 오히려 주정수요의 증가로 조주정을 수입해야 했음
1990년 이후	쌀, 보리, 고구마	'82년 이후 정부는 수입 정부보유미의 변질을 우려해 일시적으로 쌀을 주정원료로 사용한 이외에는 청주를 제외한 모든 주류의 원료로 쌀의 사용을 금지 정부보유미 처리로 고심을 하던 정부는 1990년 탁주에 한해 쌀사용을 허가하였고, 1991년에는 정부보유미중 통일미에 한해 주정원료로 허가
2001년 이후	쌀, 보리, 고구마	정부는 쌀의 재고감소를 위해 정부보유미를 주정용으로 공급하기 위한 계약을 국내 주정업체와 체결, 보리는 농가와 계약 재배

* 출처 : 대한주정판매(주)

- '60년대 양곡정책에 의해 양곡을 증류식 소주 원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소주 제조기업에게 주정제조면허를 승인
 - 그 결과 26개 영세 주정공장이 난립하게 되면서 과당경쟁, 불량주정 유통, 탈세, 도산 등 많은 문제가 발생
 - 이로 인해 70년대 초부터 주정산업 육성발전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영세주정 제조장의 통폐합 및 대형화를 유도
 - 특히, 군소 주정공장 난립에 따른 폐해 방지차원에서 신규제조 면허를 억제
 - '98년 규제개혁위원회가 국산원료와 수입조주정 배정제 이외의 주정 관련 규제를 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고착화된 주정유통관행으로 인해 과거 주정산업 구조가 지속

- '99년부터 주정제조업과 주정도매업에 대한 신규면허금지조치가 해제되었으나 주정시장으로의 신규진입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 * 정부에서 전년도 생산량 등을 감안하여 주정원료를 배정하고 있으며, 주정제조사들은 대한주정판매(주)라는 도매(판매)회사를 통한 공동판매 실시
- * 대한주정판매(주)의 지분은 주정제조업체인 (주)진로발효 17.5%, (주)창해에탄올 14.5%, 일산실업(주) 10.9% 등 보유 중

<그림 4> 주정의 유통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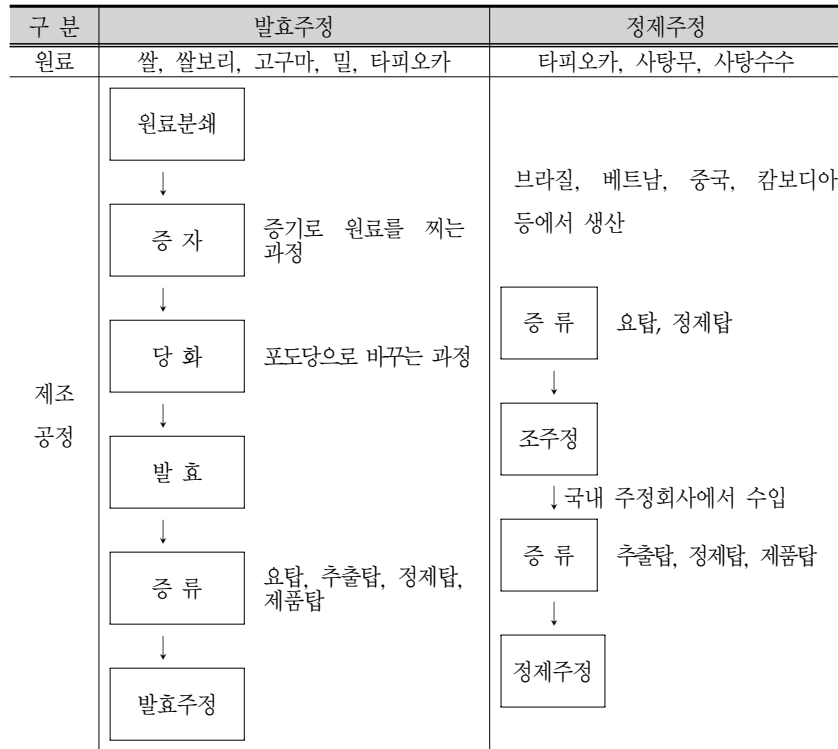


* 출처 : 대한주정판매(주)

< 제조공정 >

- 주정원료는 크게 당질 원료, 전분질 원료, 섬유질 원료로 나누어지나 대부분 전분을 다량 함유하는 고구마, 감자 등의 서류와 쌀, 보리, 밀, 옥수수, 수수 등의 곡류를 사용

<그림 5> 발효주정과 정제주정의 제조과정



* 증류과정

- 요 탑 : 발효액을 가열·증류하여 90%알콜로 증류하는 과정
- 추출탑 : 요탑에서 나온 90% 알콜에 물을 가해 알콜 10%를 희석한 후 가열하면 불순물이 제거되면서 알콜 90% 이상으로 농축
- 정제탑 : 추출탑에서 나온 90% 이상의 알콜을 96%로 농축
- 제품탑 : 정제탑에서 나온 알콜 중 메탄올 등을 제거하여 순수한 96% 주정 생산

나. 맥주시장

< 맥주시장 개요 >

- 맥주는 맥주보리를 주원료로 하는 양조주로 알콜도수는 5% 정도이며, 제품의 제조방법 및 재료에 따라 라거맥주, 프리미엄맥주, 드라이맥주, 비열처리맥주로 구분

<표 16> 맥주의 종류

구 분	특 성	도수	제 품
라거맥주 (레귤러맥주)	달고 씹쓸한 맛	4.0	OB맥주, OB라거맥주
프리미엄맥주	외국사와의 합작을 통해 생산(원료 투입 량을 늘리거나 도수를 높임)	4.5	버드와이저, 칼스버그
드라이맥주	기존의 레귤러맥주에 비해 당도를 40% 낮춰 담백한 맛을 냄	4.0	슈퍼드라이
비열처리맥주	열처리 없이 미세여과기(MCF)를 이용해 효모를 걸러내는 방법으로 생산	4.5	하이트, 카스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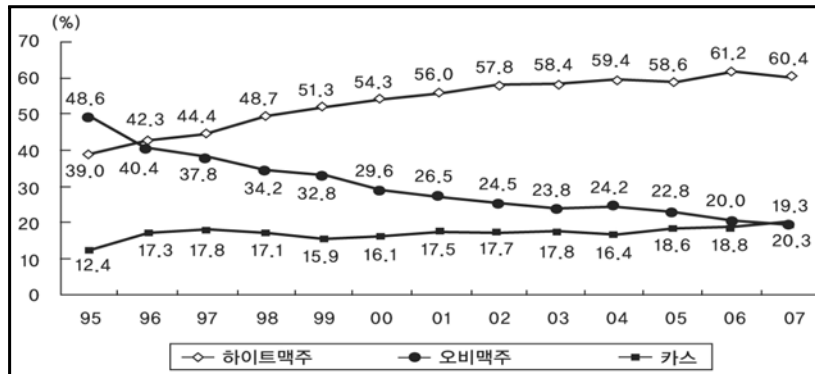
* 출처 : 한국신용평가정보(2009)

< 시장구조 및 경쟁상황 >

- 맥주시장 규모는 주류산업 중 가장 큰 3조 5,990억원으로 현재 하이트 맥주(주)(58.2%)와 오비맥주(주)(41.8%)의 독점 구도
 - 하이트맥주, 두산 오비, 진로쿠어스 카스의 3자 경쟁구도에서 IMF 이후 벨기에 기업 AB Inbev³⁾가 오비맥주·카스맥주를 인수·합병
 - 시장점유율은 '06년 이후 하이트맥주(주)는 소폭 하락하고, 오비맥주(주)는 소폭 상승하였고, '08년 기준 하이트맥주(주)가 시장지배력을 확보(약 58%)
 - 최근 점유율 변동은 하이트는 영호남 지역에 마케팅을 집중한 반면 오비가 카스레몬 등 신제품을 수도권과 젊은층을 중심으로 집중 마케팅한 결과 판매가 증가한 것에 기인
 - 맥주시장은 극심한 경기침체 속에서도 3조 4천억대('07년)→ 3조 6천억대('09년)로 약 7.8%정도 시장매출이 증가

3) 벨기에 인베브(Inbev)사가 '08.7월 미국 최대 맥주회사인 안호이저부시(anheuser Bursh)를 인수하면서 세계시장의 약 25%를 차지하는 거대 맥주사로 탄생

<그림 6> 브랜드별 맥주시장 점유율 추이



* 출처 : 한국주류산업협회 및 한국기업평가(2008)

- 이는 북경올림픽의 영향, 불황에 따른 주류소비패턴의 변화, 각 맥주 기업의 마케팅 및 영업활동 강화, 해외판로 개척 등에 기인
- * 맥주는 4가지 다양한 용기를 통해 생산되며 병(47%), 생맥주(20%), 페트병(17%), 캔(16%)순으로 판매
- 오비맥주의 매각대상에 따라 시장구도에 변화 가능성이 예상됐으나, AB Inbev가 외국 사모펀드인 KKR·AEP에 매각함으로써 경쟁 구도에 별다른 영향은 없음(국내기업 중 롯데에서 오비맥주 인수를 시도)
- 다만, 11년 이후 하이트맥주(주)와 (주)진로의 영업망 공유⁴⁾ 등 공동 마케팅이 허용된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 점유율 구도에 급격한 변화가 발생할 여지가 존재

4) 공정위의 하이트맥주(주)의 기업결합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의결 2006-009호)에서 하이트맥주(주)와 (주)진로 양사의 영업 관련 조직과 인력을 5년간 분리 운영하고, 결합회사의 주류 도매상에 대한 물품 출고 내역을 5년간 반기별로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시정명령 부과

<표 17> 맥주시장 시장점유율 추이

(단위 : kl,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하이트맥주(주)	969,770 (57.0)	1,028,503 (59.7)	1,059,584 (59.2)	1,082,784 (58.2)
오비맥주(주)	732,266 (43.0)	695,515 (40.3)	729,035 (40.8)	778,708 (41.8)
합 계	1,702,036(100.0)	1,724,018(100.0)	1,788,619(100.0)	1,861,492(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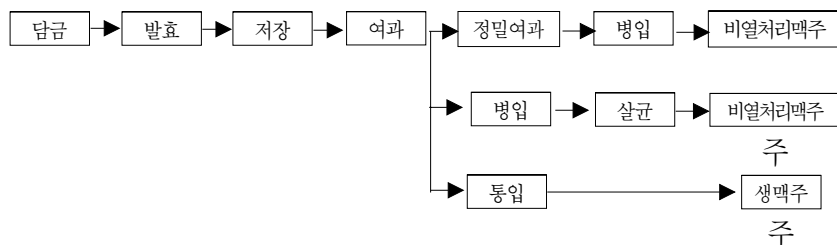
* 한국주류산업협회 출고자료 기준

- 최근 소비자 기호의 다양화, 프리미엄 제품 선호, 수입 주류 전문점 활성화 등으로 국내 맥주시장에서 수입맥주의 점유율이 상승 중
 - 국내 전체 맥주시장에서 수입맥주가 차지하는 비율은 '04년 1%에서 '06년 1.3%, 07년 1.8%로 꾸준히 성장 중
 - '08년 밀러와 샷프로 등 수입맥주업체들이 잇따라 한국법인을 설립하는 등 본격적으로 한국시장 공략을 위한 공격적인 마케팅에 돌입
 - 다만, 기존 국내맥주사의 높은 유통망이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가격도 2배정도 비싸 아직까지는 뚜렷한 경쟁압력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
 - * 국내에 수입되는 맥주의 원산지는 미국(25%), 네덜란드(21%), 일본(16%), 벨기에(7%), 멕시코(7%), 독일(6%), 중국(6%) 등임

< 제조공정 >

- 맥주는 담금, 발효, 저장, 여과 등의 절차를 거쳐 생산

<그림 7> 맥주 제조공정



<참고> 소규모 맥주(일명 하우스맥주) 산업 현황

- '09.1월 기준으로 소규모 맥주제조면허사업자는 88개로 이중 40개 업체가 현재 제조판매를 실시 중
 - 전체 맥주시장 3조 5천억원(08년말) 중 소규모 맥주 점유율은 약 0.5%로 기존 대형맥주회사에게 경쟁압력으로 작용하기는 한계
 - * 소규모맥주의 시설기준은 발효조 기준으로 5~25kl임
 - 소규모 맥주제조면허는 월드컵 및 부산아시아게임에 대비한 관광산업 지원과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맥주생산 추진차원에서 '02.1월에 도입
 - 주질보호와 세원관리차원에서 소규모맥주제조장에서 제조된 주류는 반드시 「배관」을 통해 영업장으로 운반하고 해당 영업장에서 직접 마시는 고객에게만 판매 허용
 - '08.7월부터는 하우스맥주의 테이크아웃 허용
 - 소규모맥주제조장이 해외(미국, 독일 등)처럼 활성화되지 않는 원인으로는 과도한 세금과 유통측면 등이 존재
 - (세금) 우리나라는 원가에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체계(맥주 주세는 72%)이므로 생산량이 적어 대형업체에 비해 5배 이상 원가가 들어가는 소규모제조업체에게 불리
 - * 독일에서는 소규모 맥주업체의 활성화를 위해 맥주 연간 생산량이 4,000kl이하인 업체는 추가적으로 차등과세(4,000kl 이하 : 세율의 75%, 2,000kl 이하 : 세율의 70%, 1,000kl 이하 : 세율의 60%, 500kl 이하 : 세율의 50%)를 적용
 - (유통) 동일제조자의 영업장에서만 판매가 가능하여 프랜차이즈 사업 및 소매점 납품이 불가능
 - * 일본에서는 소규모 지역맥주인 지비루를 활성화하고자 제조장외에 해당 지역 슈퍼나 편의점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유통규제를 완화
- ⇒ 전체 맥주시장 경쟁이 활성화되려면 소규모맥주 업체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이나 유통규제 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근본적으로는 맥주 제조시설기준(1,850kl) 완화를 통해 다양한 중소맥주제조업체의 출현을 촉진할 필요

다. 소주시장

〈 소주시장 개요 〉

- 소주는 곡류를 증류하거나, 알콜을 물로 희석하여 만든 술로 크게 증류식 소주와 희석식 소주로 구분
- 증류식 소주는 제곡→담금→증류→저장의 공정을 거쳐 제조되며, '60년대초까지 주로 제조되었으나, 65.1월부터 정부의 양곡정책에 따라 증류식 소주의 곡류사용이 금지됨으로써 대부분 업체가 희석식 소주로 전환
 - * '91년부터 면허가 개방되어 일부 기존 소주제조장과 신규 면허를 취득한 기업이 증류식 소주 생산(예: 안동 일품소주, 옥로주, 가양주 등)
 - 희석식소주는 연속식증류기로 증류한 순량의 알콜(주정)을 물로 희석한 소주로 냄새가 없고, 담백한 감미를 갖고 있으나 증류식 소주에 비해 알콜 외의 성분이 극히 적어 단순한 것이 특징

<표 18> 증류식 소주와 희석식 소주 비교

구분	증류식 소주	희석식 소주
원료	전분이 함유된 물료(쌀포함)	주정(쌀보리, 보리쌀, 고구마, 타피오카를 발효시켜 증류한 것) 첨가물료 : 사탕, 구연산 등
알콜 도수	30도 이상	35도 이하
증류방법	재래식 증류방법인 단식증류기로 알콜 추출	현대식 증류방법인 연속식 증류기로 95% 농도로 추출한 양질의 알콜을 물로 희석한 것
맛과 도수	고급알콜취, 곡차취, 국취 등이 약하게 풍기며, 자릿한 맛·쓴맛·단맛 등이 풍기는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주	불순성분이 전혀 없고 무취, 담백한 감미를 갖는 술로서 서민 대중주로 각광받고 있음

* 출처 : 한국신용평가정보(2009)

- 소주시장은 정부규제에 따라 업체수 및 업체별 시장지위가 등락하는 현상을 보임
 - 주세 부과기준을 종량세제에서 종가세제로 바꾸고('68년), 필요 이상으로 난립상태(약 250여개)였던 소주 제조장을 '70년부터 합동 제조할 수 있도록 통합을 유도한 결과,
 - 250여개의 난립된 업체에서 60개소의 합동체제로 제조형태가 변화하였으나, 통합업체 역시 영세시설 규모로 규격미달의 저질주류 생산과 치열한 판매 경쟁으로 부실한 경영상태가 지속
 - '70년대 초부터 1도 1사 원칙을 목표로 통·폐합정책이 추진되어 '81년에 현재의 10개 업체로 통합·축소된 면모를 갖추
 - * '73년 4월부터 국세청이 3개월간에 걸쳐 주류관련 규정을 정비, '주류 제조장 통폐합 방침'을 세우고 그해 7월부터 통합작업을 실시
 - * 이때 제조장 시설기준, 제조장별 제조비율제, 주조원료 배정제, 자가병 사용 등을 제도화하였고, '77년에는 각 지방별 제조장을 기준으로 하여 각도에 1개씩 총 10개의 희석식 소주업체를 유지
 - 특히, 자도주의무판매제도 변화(92년 자도주의무판매제도의 폐지, '95년 동제도의 부활, 96년 동제도의 위헌판결 등)에 따라 (주)진로와 기타 지방소주사의 시장점유율이 변동
 - * 지방소주업체 보호목적의 자도주의무판매제도는 지방소주업체의 지역기반을 강화한 반면, (주)진로의 추가 시장확대에는 장애요인으로 작용
 - * 지역판매제한제도 폐지는 제품개발력, 마케팅능력, 유통망 확보 등에 의한 소주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계기 형성
- 국내 주세법상 주류는 주정을 포함하여 13종으로 분류, 관리되고 있으나 소주, 맥주, 위스키 등 3종이 주류시장의 90% 이상을 차지

- 주종에 따라 주세율이 5%에서 72%까지 다양한 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소주의 경우 72%의 세율이 적용되고, '04년 이후 매년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

* 소비량(kℓ): 1,088,952('04년)→1,174,219('06년)→1,253,538('08년)

< 시장구조 및 경쟁상황 >

- 소주시장규모는 2조 8,590억원으로 10개 소주제조사가 경쟁 → 주류 시장내 치열한 경쟁구조
- (주)진로를 중심으로 한 상위 6개 업체가 전체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진로와 (주)롯데주류BG가 수도권시장을 주도
 - 시장점유율이 50%에 달하는 진로가 독보적인 지위를 확보한 가운데 전국 및 수도권 지역에서 (주)롯데주류BG가 추격하는 양상

<표 19> 소주시장 시장점유율 추이

(단위 : kℓ,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주)진로	644,357	(54.3)	655,703	(51.8)	610,413	(48.7)	682,740	(50.8)
(주)롯데주류BG	105,597	(8.9)	159,239	(12.6)	175,688	(14.0)	184,493	(13.7)
(주)금북주	107,966	(9.1)	110,371	(8.7)	111,205	(8.9)	111,185	(8.3)
대선주조(주)	93,495	(7.9)	95,378	(7.5)	97,365	(7.8)	98,273	(7.3)
(주)무학	88,213	(7.4)	90,792	(7.2)	95,008	(7.6)	98,522	(7.3)
보해양조(주)	67,945	(5.7)	70,610	(5.6)	76,802	(6.1)	74,151	(5.5)
(주)선양	34,508	(2.9)	39,560	(3.1)	40,200	(3.2)	43,729	(3.3)
하이트주조(주)	17,209	(1.5)	16,063	(1.3)	16,572	(1.3)	16,356	(1.2)
(주)충북소주	12,503	(1.1)	13,502	(1.1)	16,482	(1.3)	18,327	(1.4)
(주)한라산	14,265	(1.2)	14,337	(1.1)	14,645	(1.2)	15,360	(1.1)
합 계	1,186,058	(100.0)	1,265,555	(100.0)	1,254,380	(100.0)	1,343,336	(100.0)

* 시장점유율은 제조장별 출고실적을 기준

- (주)금복주, 대선주조(주) 등 지방소주사는 과거 자도주판매제도의 영향으로 지역별 수요기반을 유지하고 있어 자도내에서 80~90%에 달하는 확고한 점유율을 유지하며 소주시장을 분할
- 자도주 선호 의식으로 인한 영향으로, 지역별 점유율 차이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맛의 차별화 정도가 높지 않고, 유사한 패키지와 디자인(병형, 상표형태) 등을 사용하고 있어 제품의 차별화보다는 정형화 경향이 높게 나타남
- * 금복주(대구 경북), 대선(부산), 무학(경남), 보해(전남), 선양(충남), 하이트주조(전북), 충북소주(충북), 한라산(제주)

<표 20> 소주업체별 주요 판매지역 시장점유율 현황(200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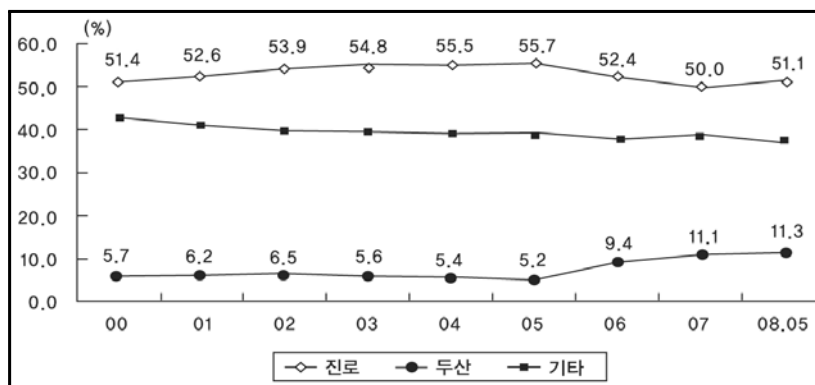
구 분	브랜드	주요판매지역 및 지역 점유율
(주)진로	참이슬	수도권(80.8%), 충북(59.6%), 충남(48.8%), 강원(59.0%), 전북(49.5%)
(주)롯데주류BG	처음처럼	수도권(18.4%), 강원(41.0%)
(주)금복주	참	경북(86.6%)
대선주조(주)	C I	부산(81.6%)
(주)무학	화이트	경남(74.1%)
보해양조(주)	앞새주	전남(79.6%)
(주)선양	새찬	충남(46.1%)
하이트주조(주)	하이트	전북(34.1%)
(주)충북소주	시원	충북(37.0%)
(주)한라산	한라산	제주(88.3%)

* 출처: 업체자료(08년말 기준)

- 최근 주류업계는 M&A가 활발히 진행되는 등 경쟁이 가속화되는 추세
 - 두산주류BG가 국내 거대기업인 롯데그룹으로 편입되고, OB맥주도 M&A를 실시하여 주류업계가 거대기업화 하는 경향이 두드러짐

- 이에 따라 주류시장의 판매경쟁이 이전보다 더욱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주류산업의 구조개편도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
- * 경쟁적인 신제품 출시와 판매확대를 위한 공격적인 마케팅 전개, 지방소주사의 수도권시장 진출 예상 및 롯데그룹 소주 시장 진출로 소주 판매 경쟁이 그 어느 때 보다 치열
- 그동안 높은 브랜드력과 고객충성도를 바탕으로 소주시장의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던 (주)진로의 점유율은 '06년 (주)두산(현 롯데주류BG)의 '처음처럼' 출시로 변화

<그림 8> 소주시장 점유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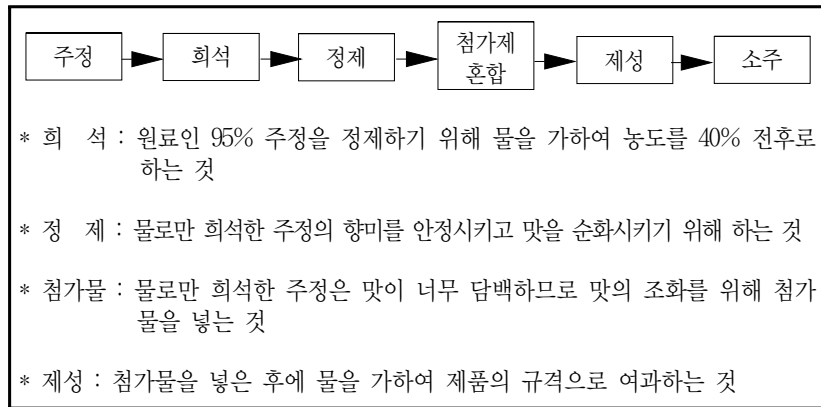


* 출처 : 한국주류산업협회 및 한국기업평가(2008)

< 제조공정 >

- 소주는 주정, 희석, 여과, 첨가제 혼합, 병입 등의 절차를 거쳐 제조됨

<그림 9> 소주 제조과정



라. 위스키시장

< 위스키시장 개요 >

- 위스키는 발아한 곡류와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증류하여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으로 알콜분이 60% 이상인 고도주임
- 위스키는 원료에 따라 크게 몰트위스키와 그레이н위스키로 구분되며, 세계 각지에서 원료·제조방법·풍토 등에 따라 독특한 특징을 지님

<표21> 몰트위스키와 그레이н위스키 비교

구 분	몰트위스키	그레이н위스키
원 료	이탄(Peat: 석탄의 첫 번째 단계)으로 건조시킨 몰트(맥아 : 보리에 싹을 틔운 것)	호밀, 밀, 옥수수 등 곡류
당 화	원료맥아에 함유된 당화효소에 의해 전분이 당화됨	곡류에 물료를 혼합하여 맥아로 당화
발 효	당화액에 효모 첨가	당화액에 효모 첨가
증 류	단식증류기로 2회증류, 알콜분 60~70%	연속증류기로 1회증류, 알콜분 80% 이상
저 장	오크통 3 ~30년	오크통 3년 이상
특 징	색향이 진함	색향이 연함

* 출처:한국신용평가정보(2008)

- 스카치 위스키, 아이리시 위스키, 캐나다안 위스키와 각종 미국 위스키로 구분되기도 함

<표 22> 위스키 종류별 특성

구 분	특 성
스카치 위스키	향미가 밴 맥아를 물과 혼합하여 맥아즙을 만들고 이것을 발효시켜 발효액을 만들어 다소 농도가 옅고, 독특한 맥아 훈향이 남
아이리시 위스키	맥아를 연기에 노출시키지 않고 볶아 스카치 위스키와 매우 비슷한 맛을 지니지만 훈향이 나지 않음
캐나다안 위스키	맥아즙은 옥수수·호밀·밀·보리맥아 등을 혼합해서 만드는데, 농도 및 기타 방법은 생산업자에 따라 다름
각종 미국위스키	맥아와 기타 곡류(주로 옥수수·호밀)를 섞어서 만든 발효액으로 알콜 함량 80%의 위스키를 만들

< 시장구조 및 경쟁상황 >

- 한국은 세계 9위의 위스키 소비 국가로 국내 주류시장을 대표하는 3대 주종 가운데 하나인 위스키는 우리나라 주류시장에 중요한 부분으로 그동안 많은 변화를 겪어왔음
 - 위스키시장은 '04년 잠시 감소세를 보인 이후 점차 시장 안정과 함께 소비량이 증가하였고,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경기침체가 시작된 '08년말 이후 다시 감소세로 접어들
 - 우리나라는 점차 스탠다드에서 프리미엄급으로, 프리미엄에서 슈퍼 프리미엄급으로 선호도가 고급화 추세
 - 이중 프리미엄과 슈퍼 프리미엄은 '06년부터 전체 위스키 시장의 99%를 차지할 정도로 강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슈퍼 프리미엄 위스키는 '99년에는 시장점유율이 1%에 불과했으나, '08년에는 27%로 꾸준하게 성장 중
 - * 스탠다드(Standard)위스키 : 보통 최저 9~8년 숙성된 몰트를 함유한 제품

- * 프리미엄(Premium)위스키 : 숙성연도로 분류시 12년에서 17년 미만 위스키를 블렌딩한 위스키(예: 원저 12, 조니 워커 블랙 등)
 - * 슈퍼 프리미엄 위스키 : 숙성연도로 분류시 17년 이상 위스키를 블렌딩한 위스키(예: 원저 17, 발렌타인 17 등)
- '07년 기준 위스키 시장은 총 매출액이 6,338억원으로 페르노리카코리아(주)(33.9%)와 디아지오코리아(주)(33.6%)의 점유율이 시장의 67.5%를 차지
- 국내 위스키 시장은 2강(페르노리카, 디아지오), 1중(롯데칠성), 3약(하이스코트, 두산, 보해양조) 구도를 형성하고 있으며 업체간 경쟁이 치열
 - 그러나 디아지오가 '07년 6개월 동안 수입업 면허 취소를 받으면서 시장판도의 변화가 예상

<표 23> 위스키시장 시장점유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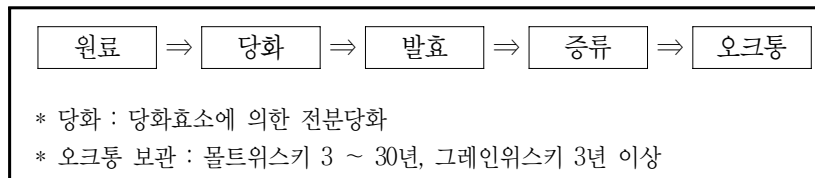
(단위 : kl,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롯데칠성(주)	4,649	(41.6)	4,482	(41.6)	4,919	(40.5)	4,028	(49.0)
페르노리카(주)	6,293	(56.3)	6,115	(56.8)	6,442	(53.0)	3,258	(39.6)
디아지오(주)	178	(1.6)	131	(1.2)	738	(6.1)	901	(11.0)
(주)두산	30	(0.3)	27	(0.3)	30	(0.3)	19	(0.2)
보해양조(주)	18	(0.2)	19	(0.1)	20	(0.1)	12	(0.1)
합 계	11,168	(100.0)	10,774	(100.0)	12,149	(100.0)	8,218	(100.0)

* 시장점유율은 제조장별 출고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기준일 경우와는 상이

< 제조공정 >

<그림 10> 위스키 제조공정



마. 와인시장

- 지난 몇 년 동안 약 30%씩 성장해 온 국내 와인 수입업체들은 포화된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에 세계 경제 위기가 겹쳐 '08년 현상유지나 10~15% 성장에 머무름
 - 신세계가 와인 수입 법인인 신세계와인컴퍼니를 설립함에 따라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 등의 유통망을 활용한 적극적인 사업 전개를 실시하고, 롯데 그룹이 두산주류BG 인수를 통해 와인 시장에 새롭게 진입
 - 대기업의 와인시장 진입으로 기존 금양인터내셔널, 나라식품, 신동와인, 길진인터내셔널 등이 포진해 있는 와인 시장이 새로운 구도로 재편
- 전체시장규모는 2,275억원으로 금양 12.6%, 두산 10.9% 및 기타 중소수입업체(45.5%)가 참여하는 경쟁적 시장
 - 와인수입량 추이 : '01년(약 2,000만불) → '07년(1억 4,348만불)
 - * 와인수입국가('08년) : 칠레(23%), 프랑스(19%), 스페인(16%), 미국(14%)
 - 대부분의 소비자는 2만원 이하의 저렴한 와인제품을 선호
 - * '08년 이마트매장(전국 113개) 판매량 기준으로 볼 때 1만원 이하 제품이 30%를, 1~2만원 제품이 34%를 차지

<표 24> 국내 와인시장 현황(2008년)

(단위 : 억원, %)

업 체	매 출 액	시장점유율
금 양	286	12.6
두 산	247	10.9
나 라	128	7.9
신 동	150	6.6
아 영	144	6.4
롯데아사히	119	5.3
동 원	67	2.9
레벡드매일	45	2.0
기 타	1,038	45.5

* 출처 : 관세청 통관자료

바. 기타 주류시장

- 기타주류시장은 국순당 13.1%, 두산 14.6%, 롯데 1.3% 등 다수의 사업자들이 참여하는 경쟁적 시장
 - 청주는 '08년 프랜차이즈 일본식 선술집의 확대 등으로 인해 국내 산보다 일본산 청주(사케)시장이 급성장
 - 약주는 기존 제품의 리뉴얼과 신제품개발 등을 통하여 시장활성화를 기하는 추세
 - 과실주는 건강중시 소비경향으로 높은 성장세를 구가하나, 수입와인이나 사케 등으로 수요가 일부 대체되고 있으며, 복분자주는 소비자의 선호 증대로 인한 대기업의 잇따른 신규진입 등으로 성장 추세
 - 리큐르(매실주, 각테일, 인삼주 등)는 과실주 등 저도주와의 경쟁심화 및 고세율(72%로 과실주 세율 30%보다 높음)로 인해 일부 품목(설중매, 매실마을 등)은 과실주로 주종을 변경
 - 브랜드는 40도의 높은 고도주로 다소 비대중적이며 대부분 수입에 의존

<표 25> 기타주류 출고량 추이

(단위 : kl, %)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청 주	25,747	23,963	22,884	22,276
약 주	23,530	18,552	14,091	10,858
일반증류주	10,277	10,987	12,086	12,031
과실주	14,485	16,285	18,441	18,551
리큐르	4,874	3,590	2,420	2,059
기타주류	2,698	2,980	3,431	4,048
브랜드	273	86	186	199

* 출처: 한국주류산업협회

<표 26> 기타주류 시장점유율 현황(2007년)

(단위 : 억원, %)

업체명	매출액	시장점유율
국순당	751	13.1
보해양조	441	7.7
두 산	838	14.6
롯데	80	1.3
기 타	3,626	63.2

* 출처: 한국주류산업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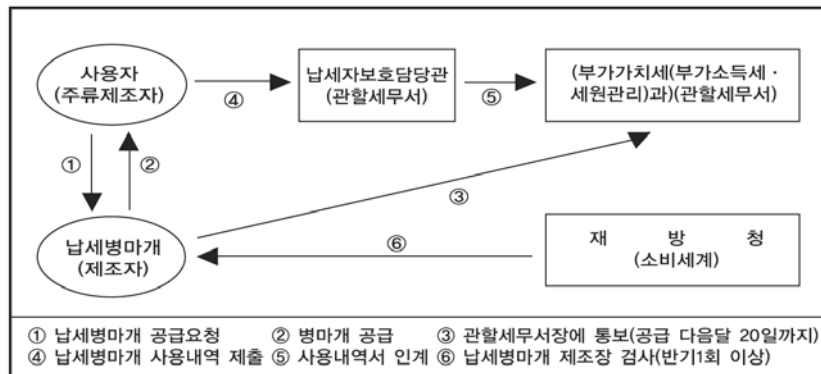
사. 주류납세병마개 시장

< 주류납세병마개시장 개요 >

- ☐ 국세청장은 납세병마개 제조시설을 갖춘 자를 납세병마개 제조자로 지정
 - 납세병마개는 납세증명표지의 하나로 주류제조자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자가 제조한 병마개를 사용해야 함(주세법 시행령 제57조)
 - * 납세병마개제도는 전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시행되는 제도로 종래

삼화왕관(주)(’72년)과 세왕금속공업(주)(’85년)이 납세병마개 제조업자로 지정

<그림 11> 주류납세병마개 공급체계



< 시장구조 및 경쟁상황 >

- 국내 병마개시장규모는 연간 약 100억개(3,000억원)로 삼화왕관 등 17개사가 치열하게 경쟁중이며 최근 5년간 시장은 정체상태
- 납세병마개시장은 2사(삼화왕관(주), 세왕금속공업(주)) 복점체제로 연간 약 57억개(681억원)의 납세 병마개를 생산
 - 삼화왕관은 소주 등에 사용되는 알루미늄캡 병마개시장(점유율 56.8%)에서 지배적 사업자(전체 납세병마개시장 점유율은 48.8%)
 - * 주요 주주현황 : 두산의 특수관계인 47.7%, 동양석판 8.31%
 - 세왕금속은 전체 납세병마개시장에서 1위 사업자(점유율 51.2%)
 - * 주요 주주현황 : 하이트맥주 24.85%, 무학 13.15%, 보해양조 12.91%, 금복주 12.53% 등 주류제조업체

<표 27> 주류납세병마개 제조업체 현황

구분 (단위 : 억원)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매출액	순이익	매출액	순이익	매출액	순이익	매출액	순이익
삼화왕관(주)	710	54	730	80	783	68	781	112
세왕금속공업 (주)	350	17	364	16	391	14	400	31

* 출처: 각사 감사보고서

3. 주류산업의 수익성

- ☐ 복점시장인 맥주시장과 안정적인 시장분할 구도를 형성한 주정시장의 수익성은 매우 높은 수준이나
 - 업체간 경쟁이 치열한 소주시장의 수익성은 상대적으로 낮음
- ☐ EBITDA*대 매출액의 추이를 살펴보면 맥주와 주정은 매년 약 20~30%의 높은 수익률을 유지하나 소주는 평균 16%의 수익률을 유지

<표 28> 주류산업 수익성 지표 추이

(단위 : %)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자기자본 순수익율	소주	-821.97	-	2,380.93	12.97	18.45
	맥주	9.51	10.26	7.38	8.40	12.97
	주정	34.76	21.24	15.53	16.56	17.47
	주류 전체	-31.57	-73.11	4.48	-0.59	2.37
	제조업 전체	9.56	15.61	12.87	10.37	11.10
	전 산업	9.74	13.83	12.39	9.95	10.15
매출액대비 영업이익율	소주	12.07	8.71	13.42	8.16	10.43
	맥주	19.23	16.19	14.66	18.96	23.05
	주정	25.15	20.48	16.12	17.79	19.16
	주류 전체	14.14	13.87	4.73	3.59	2.65
	제조업 전체	6.87	7.56	6.12	5.34	5.88
	전 산업	6.39	6.75	5.86	5.24	5.45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매출액 순이익율	소주	-30.51	3.33	19.68	5.73	7.66
	맥주	10.18	10.98	7.84	9.71	15.55
	주정	21.29	18.46	13.27	13.91	15.51
	주류 전체	-13.37	-15.35	2.36	-0.38	1.87
	제조업 전체	6.87	7.56	5.27	4.45	4.87
	전 산업	3.76	5.41	4.88	4.23	4.33
EBITDA 대 매출액	소주	17.80	14.05	18.43	13.98	15.53
	맥주	31.03	27.64	25.71	28.77	31.01
	주정	28.03	24.33	20.93	23.11	25.04
	주류 전체	5.07	-2.46	10.66	7.28	9.55
	제조업 전체	3.82	6.17	11.80	11.19	11.76
	전 산업	10.59	12.20	11.06	10.34	10.62

* EBITDA(Earnings before interest, tax,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 to sales)
는 이자 및 법인세차감전순이익에 감가상각비와 무형자산상각비를 더하여 산출된 것
으로 경영성과 측정시 영업외적 요인이나 회계처리방식 차이에 의한 영향을 배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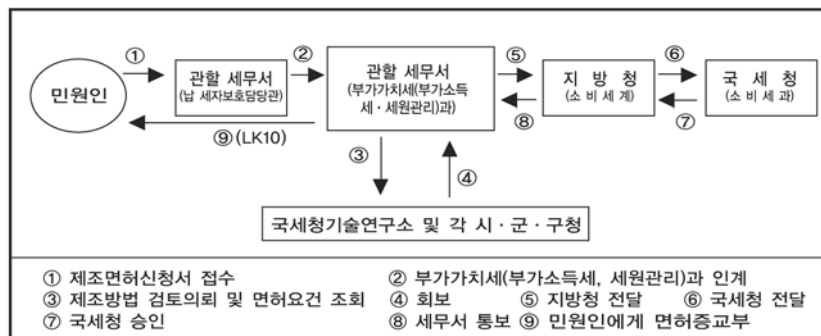
** 출처: Kis-line 산업합산재무분석 및 기업경영분석

4. 주류산업의 유통구조

가. 주류제조업의 면허 및 관리

- 주류 제조업 영위를 위해서는 「주류 종류별로 제조장 시설기준 등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취득」하도록 함
- 주류제조면허 취득절차

<그림 12> 주류제조면허 취득절차



○ 주류제조장 시설기준

- 주류 제조장 시설기준은 '08.2월 주세법 개정으로 대폭 완화(청주 : 15 ⇒ 6kl, 과실주 : 42 ⇒ 21kl, 증류식소주 : 12 ⇒ 6kl 등)

<표 29> 주류제조장의 시설기준(발효조 총용량기준)

구분	주정	탁주 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	희석식 소 주	증류식 소 주
시설 기준	550 kl 이상	3 kl 이상	6 kl 이상	(전)925 kl이상 (후)1,850 kl이상	21 kl 이상	130 kl 이상	6 kl 이상

- 특히 탁주, 약주의 경우 '10.2월 주세법시행령 개정으로 시설기준 완화(6 ⇒ 3kl)

- 한편, 시설요건 외에 면허신청인의 법률행위능력, 세금채납, 범죄경력 등과 관련하여 면허거부 사유를 명시

□ 주세법 개정('02.2월)으로 소규모 맥주 제조* 면허제도가 도입

- 지역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맥주생산이 가능하도록 소규모 맥주제조장*을 허용

*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을 허가받은 자로서 그 영업을 허가받은 장소에서 맥주를 제조하여 영업장 안에서 직접 고객에게 판매하는 자

나. 주류판매업의 면허 및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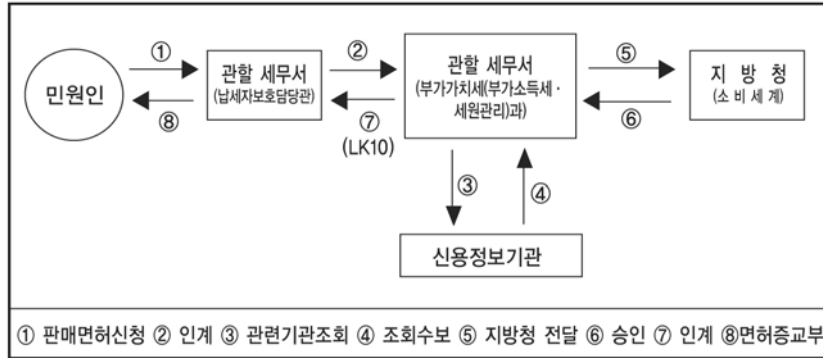
□ 주류 판매업 영위를 위해서는 「주류판매업 종류별 판매장마다 일정 시설기준 및 기타 요건을 갖추어 면허를 취득」 하도록 함

- 주류도매업 면허 취득절차

- 국세청이 해당지역(시, 군)의 인구수, 주류소비량 및 판매장 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허용범위를 결정하여 해당 세무서에 통지

* 해당 세무서는 일정 자격조건을 갖춘 자 중에서 추천하여 선정

<그림 13> 주류도매면허 취득절차



○ 주류 판매업 면허 유형

- 주류판매업은 크게 주류도매업(5개종)과 주류소매업(2개종)으로 구분

<표30> 주류판매업 종류 및 주요 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도매업 면허	종합주류 도매업	- 일반 탁주와 주정을 제외한 모든 주류를 주류제조자 또는 외국산 주류를 직접 수입한 자로부터 구입하여 도매
	특정주류 도매업	- 탁주, 약주, 민속주, 농민·생산자단체주류를 주류제조자 로부터 구입하여 도매
	주정도매업	- 주정만을 구입하여 도매
	주류수출입	- 국산주류를 수출하거나 외국산 주류를 수입하여 도매
	주류중개업	- 주류 수출입만을 중개하거나 국내에서 중개할 수 있는 슈 퍼연쇄점 본·지부 등에 대한 주류 중개업 면허 · 주류중개업면허(가): 수입 또는 수출만을 중개 · 주류중개업면허(나): 일반 탁주와 주정을 제외한 모든 주 류를 소속직영점 및 가맹점에 중개
소매업 면허	주류소매업	- 주정 이외의 주류를 허가장소에서 소매
	의제판매업	- 아래의 자에게 사업범위를 소매로 지정하고 사업자등록증 에 주류판매신고 확인을 하여 약식으로 부여 ·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판매 업을 하는 자 · 주류 판매가 주업이 아니고 주류를 직접 구입하지 아니 하는 자로서 식품잡화점·일용잡화점 및 이와 유사한 상 점에서 주류를 소매하는 자

- 주류유통에는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일정한 시설기준 및 기타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도록 규정

<표 31> 주류판매업의 종류별 면허요건

구 분	면 허 요 건		
종합 주류 도매업	구분	인구50만명 이상의 시	기타
	자본금 (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	5천만원 이상
	창고면적	165㎡ 이상	66㎡ 이상
	기타	- 종합주류도매업만을 전업할 것 - 면허신청인(법인인 경우 그 임원 포함)의 자격 ① 미성년자가 아닐 것 ② 면허신청일 현재 다른 주류제조업체 및 주류판매업 체의 임원이 아닐 것 ③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처벌받은 경우 5년이 경과되었 을 것 ④ 부도 등의 사유로 신규여신이 중단된 경우 그 사유 가 해제되었을 것 ⑤ 국세징수법에 의해 결손처분을 받은 경우 2년이 경 과되었을 것	
	창고면적	33㎡ 이상	
특정 주류 도매업	판매시설	저장용기 및 방충설비(병입주만을 판매하는 경우를 제외 한다)	
	기타	면허신청인의 자격요건 제1호 기타란 나목(1)·(3) 내지 (5)	
주정 도매업	가. 주정(공업융합성주정을 제외한다)도매업만을 전업할 것 나. 시설기준		
	구분	시설구분	시설기준
	(1) 주류의 품질 과 규격을 분 석할 수 있는 기계·기구	(가) 가스크로마토그래피 (나) 화학전칭 (다) 현미경 (라) 향온향습기 (마) 건조기 (바) P.H메타 (사) 고압살균기 (아) 증류수채취기 (자) 무균상자 (차) 간이증류기 (카) 주정계 (타) 비중계	1대 감도 0.1mg 1대 1,000배 이상 1대 0~65℃ 1대 110℃ 1대 감도 0.1 1대 20파운드 이상 1대 시간당 2ℓ 이상 1대 1대 1회 2점 이상 증류 1대 0.2도 눈금 0~100도 1조 0.7~1.85SG 1대

구분	면허 요건	
주정 도매업	(2) 저장조	주정의 종류별로 500D/M 이상 용량의 저장조 1개 이상
	(3) 탱크로리	용량합계가 500D/M 이상
	다. 면허신청인 자격요건 :제1호 기타란 나목(4)·(5)	
구분	면허 요건	
주류 수출 입업	자본금 (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	5천만원 이상
	창고면적	66㎡ 이상
	기타	가. 주류수입업만을 전업할 것. 다만, 주류를 제조하거나 수출하는 것과 주류의 수출입을 중개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면허신청인의 자격요건 제1호 기타란 나목(4)·(5)
주류 중개업	가. 주류의 수출입을 중개하고자 하는 자는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무역업고유번호를 받은 자이어야 한다. 나. 국내에서 주류를 중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체인사업자로서 면허신청일 직전 6월간 소속 가맹점 및 직영점에 대한 상품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이고 매월 상품공급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자 (2)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임업협동조합법」 및 「신용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임업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	
주류 소매업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면허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 나.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외의 판매장에서 주류소매업 면허를 받으려는 자	

<표 32> 주류 판매업 면허 현황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도매업 면허	종합주류 도매업면허	1,226	1,233	1,229	1,214	1,198	1,196
	특정주류도매업 면허	1,331	1,473	1,476	1,520	1,541	1,512
	주정도매업면허	2	2	1	1	1	1
	주류수출입면허	658	672	708	734	784	827
	주류중개업면허	317	318	315	307	307	318
소매업 면허	일반소매업	127,736	127,397	126,010	124,500	123,343	123,711
	유통음식점	486,912	489,770	478,433	484,076	491,551	499,937
	기 타	229	265	242	220	243	3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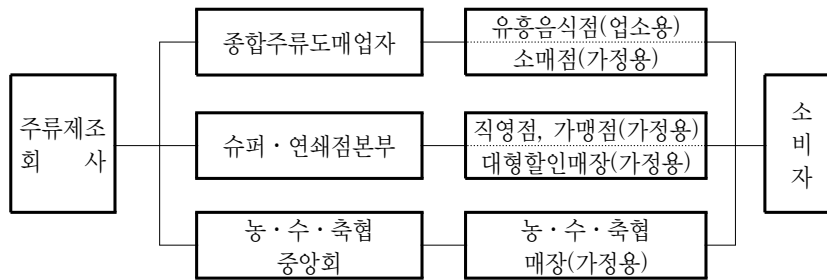
* 국세통계연보

다. 주류유통 구조

- 주류는 판매단계별로 면허제도를 채택하여 원칙적으로 제조 → 도매 → 소매 → 소비자의 유통단계를 거침
 - 주류제조자는 종합주류도매업자, 주류중개업자(슈퍼·연쇄점본부 및 농·수·신협 중앙회 등), 유통음식점업자 등에 주류를 판매
 - * 다만 특정주류(탁주, 약주, 청주, 민속주, 농민주)는 전통주 활성화 차원에서 주류제조자가 직접 소매업자, 유통음식업자 및 실수요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
 - 종합주류도매업자는 소매업자, 유통음식업자, 대형할인매장, 연금매장 등에 주류를 판매
 - 특정주류도매업자는 특정주류(탁주, 약주, 청주, 민속주, 농민주)를 소매업자, 유통음식업자, 대형할인매장, 연금매점, 농·수·신협매장에 판매

- 주류중개업자는 대형할인매장, 슈퍼·연쇄점 가맹점, 농·수·신협 매장에 주류를 판매
- 소매업자·의제판매업자는 주류를 가계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유흥음식점업자는 음식점내에서 직접 음용하는 고객에게만 판매
- 주류는 용도별(가정용, 할인매장용, 유흥음식점용, 주세면세용)로 판매하도록 하고, 용도에 따라 유통단계를 구분
- 가정용 및 할인매장용은 종합주류도매업자와 주류중개업자 모두 소매업자에게 공급 가능하나, 유흥음식점용 주류는 종합주류도매업자만 공급 가능

<그림 14> 전체 주류 유통구조



<그림 15> 소주 유통단계별 거래가격

제조사	(출고 가격)	1차거래선	(도매 가격)	2차거래선	(소매 가격)	소비자
제조사	⇒ 888.90원	도매장,슈퍼/ 체인본·지부	⇒ 약 950원	슈퍼/연쇄점 편의점 등	⇒ 1,200 ~1,300원	소비자
	⇒ 888.90원	도매장	⇒ 약 1,110원	일반음식점	⇒ 3,000 ~4,000원	

* 진로 참이슬 360ml(병제품)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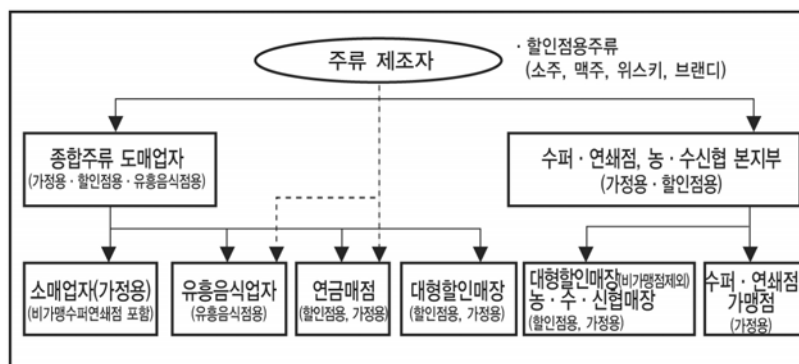
- 주류용도구분표시제는 유흥음식점 등이 일반소매점에서 주류를 무자료로 구입·판매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76년부터 시행 ⇒ '02.10월부터 「할인매장용」 추가

<표 33> 2008년 용도별 주류판매 현황

구 분	희석식 소주		맥 주	
	출고량(kℓ)	점유비(%)	출고량(kℓ)	점유비(%)
합 계	1,340,151	100.0	1,861,494	100.0
가정용	452,991	33.8	706,484	38.0
유흥업소용	614,125	45.8	899,941	48.3
할인매장용	179,288	13.4	160,789	8.6
수출·군납용	93,747	7.0	94,280	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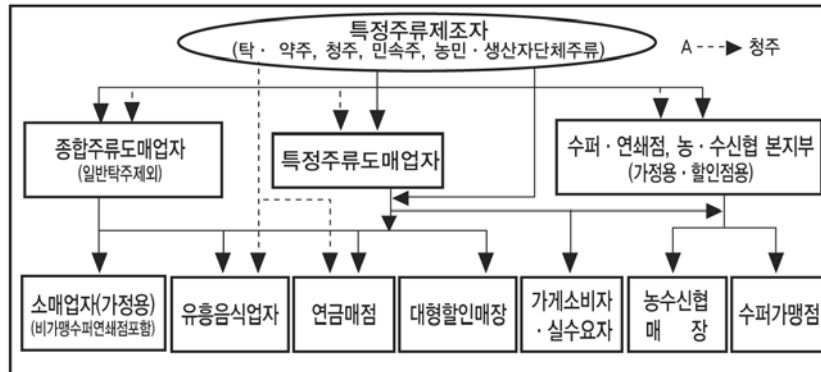
- 주류유통과정에서 주류는 주정과 일반주류, 특정주류(민속주, 농민주 등) 및 수입주류로 대별하며 이들 주류는 각기 유흥음식점용과 가정용으로 구분되어 주류 종류별로 유통경로(거래상대방)를 지정
- 일반주류의 유통구조

<그림 16> 일반주류의 유통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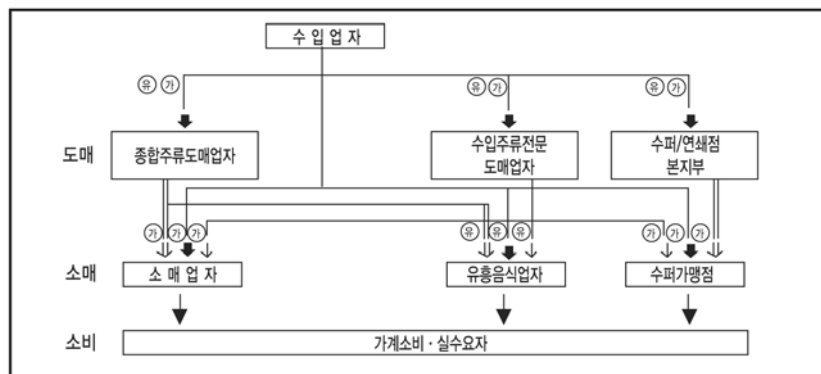
○ 특정주류의 유통구조

<그림 17> 특정주류의 유통구조



- 수입주류는 수입업자가 외국으로부터 술을 수입하여 종합주류도매업자, 주류수입전문도매업자, 주류중개업자는 물론 소매업자와 의제 판매업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국인클럽 등에 판매
- 주류수입전문도매업자는 수입업자로부터 구매하여 수퍼·연쇄점 가맹점을 포함한 소매업자와 의제판매업자에게 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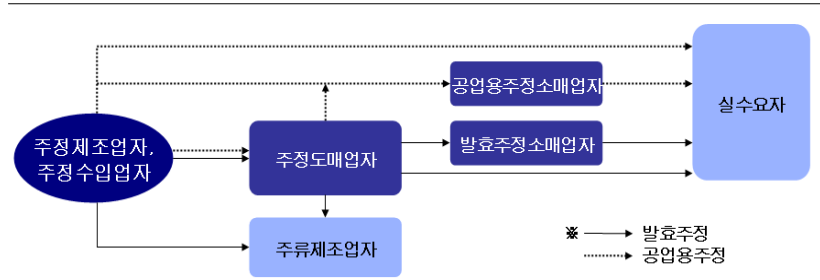
<그림 18> 수입주류의 유통구조



* 유 : 유흥음식점용, 가 : 가정용

- 주정제조회사에서 생산한 주정은 유일한 주정도매면허자인 대한주정 판매를 통해 소주제조사를 포함한 주정 수요자에게 판매
- 주류용주정의 유통경로를 자율화 하여 제조사가 자율적으로 구매 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실시('01년)
 - * 주정제조업자가 주류용 주정을 수요자에게 직접 판매하거나 대한주정판매(주)에게 판매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
 - * 당시 주류규제 완화차원에서 신규 주정제조면허 허용, 주정가격 고시제 폐지를 함께 실시
- 주정유통 일원화 시스템 유지를 위해 주류제조사가 주정제조사로 부터 주정을 직접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국세청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규제 강화('06년)

<그림 19> 주정 유통구조



* 출처 : 대한주정판매(주)

라. 외국사례

- 주류유통체계는 크게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
 - (미국, 캐나다, 스웨덴) 주류도매를 전매제로 운영하며 소매점 및 유흥음식점 등의 규제가 매우 강한 유형
 - * 주류판매전문점 체제를 운영하여 주류판매전문점의 영업시간·판매물량·판매점의 위치 및 수를 제한

- (일본, 영국) 우리나라와 유사한 주류도매·소매면허제를 운영
 - * 도매면허는 지역내 정해진 개수를 제한하거나 지방정부 등의 동의 하에 개수에 대한 제한 없이 면허허가
- (독일, 프랑스) 알콜 도수에 따라 주류유통체계를 구분하여 운영
 - * 고도주는 정부가 전매 또는 면허체제로 엄격히 운영하나, 저도주(맥주)는 신고제로 운영

Ⅲ. 정부규제 현황

1. 주류관련 정부규제 현황

가. 주류제조 및 판매의 면허요건

- 주류를 제조하려면 주류의 종류별로 주류제조장마다 시설기준 등 요건을 갖추어 세무서장이 면허발급, 주류를 판매하려면 주종별로 판매장마다 시설기준 등 요건을 갖추어 세무서장이 면허발급(주세법 제6조, 제8조)
- 주종별 시설기준에 발효조, 담금조, 저장조, 검정조 등의 총용량기준 및 면적을 규정하는 등 일정 시설 규모이상이 되도록 함(주세법 제6조 제1항)
 - (문제점) 주종별로 주류제조면허를 받도록 되어 있어 이미 면허를 가진 업체가 새로운 주종을 개발·제조하려면 다시 면허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 등으로 인해 신제품개발 노력이 위축
 - * 일부 주종을 제외하고는 시설기준이 높아 신규진입의 장애요인으로 작용
-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해당지역(시, 군)의 인구 수, 주류소비량 및 판매장 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면허수를 제한함으로써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통제
 - * 면허제한이 실시됨에 따라 지역별로 유통마진을 10~25%로 담합하여 유흥업소 및 일반 소매점과 거래하거나, 기존 종합주류도매업체에 높은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는 부작용이 발생
 - * 지역별로 종합주류도매업면허요건인 자본금과 창고면적을 차등화 (인구 50만 : 자본금 1억원, 창고 165㎡ 이상/기타 : 5천만원 및 66㎡ 이상)

나. 주정도매업 면허제도

- 주정의 판매나 구입을 주정도매업자 또는 주정도매업자가 지정한 소매업자를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제한
 - 주정도매업 면허를 받으려면 주정의 종류별로 500D/M 이상 용량의 저장조 1개 이상, 용량합계가 500D/M 이상의 탱크로리 등의 시설을 모두 갖추도록 함(주세법 시행령 제9조)
 - * 현재 주정도매업면허를 가진 사업자는 대한주정판매(주)뿐임
 - (문제점) 주정도매업면허의 시설기준이 지나치게 높게 설정되어 있어 시장의 진입장벽으로 작용

다. 주정의 가격신고제도

- 주정업체 등은 주정 출고가격 및 판매가격을 국세청장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시 제조(판매)원가계산서와 소관 주류업단체장의 출고(판매)가격 검토의견서 등을 제출하도록 함(주세사무처리규정 제65조)
- 사업자단체가 주정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사업자단체를 통하여 주정업체간 가격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효과 발생

라. 주류 원료용 주정 구매 사전승인

- 주류제조업자가 주류 원료용 주정을 주정제조업자로부터 직접 구입하거나 수입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장의 사전승인이 필요(주세사무처리규정 제157조 제4항)
- 주류제조업자는 주정도매업자 또는 주정제조업자로부터 주정을 구입할 수 있음 (주세사무처리규정 제86조)
 - (문제점) 주정도매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주정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국세청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한 것은 주정사용자의 주정구입에 대한 선택권을 제한하고 주정직거래를 원하는 주정수요자들의 중간유통비용 부담

마. 주정생산량 및 원료 배정제도

- 주류업단체의 장은 제조장별 연간 주정생산량을 책정하고 이에 필요한 원료의 종류 및 수량을 산정하여 국세청장에 제출(주세사무처리규정 제53조)
- 국세청장은 주정생산에 소요되는 국산원료와 수입조주정의 종류 및 수량을 지정 (주세사무처리규정 제53조, 제54조)
 - (문제점) 정부와 업계간 협의를 통한 주정생산량 및 원료배정은 사업자의 핵심적인 사업활동을 제한하고 시장자유경쟁을 저해하며, 주정업체의 주정기술 개선 및 다양한 제품개발노력 등을 저해

바.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

- 국세청장은 납세병마개 제조시설을 갖춘 자중에서 납세병마개 제조자를 지정(주세사무처리규정 제110조)
- 주류제조자가 납세증명표지의 하나로 납세병마개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국세청장이 지정한 자가 제조한 병마개를 사용해야 함(주세법 시행령 제57조)
- 삼화왕관(주)을 납세병마개 제조자로 지정('73.2월)한 이후 독점해소 명분으로 삼화왕관 영천공장을 독립 분리시켜 세왕금속공업(주) 설립과 동시에 납세병마개 제조자로 지정('85.3월)
 - (문제점)지정제로 인해 신규업체의 진입이 봉쇄되어 주류제조자의 다양한 병마개 선택권이 제한되며 기존 지정업체에 의한 독과점적 구조가 고착화됨으로써 사업자간 경쟁촉진 및 병마개 제조기술의 향상 저해

사. 주류의 통신판매 제한

- 주류의 통신판매는 민속주, 농민·생산자단체가 생산하는 주류에 한해

우체국과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인터넷 쇼핑물 및 전통주제조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허용(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 미성년자가 아닌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되 동일인에 대한 1일 판매 수량은 50병 이하로 함
- (문제점) 통신판매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사실상 봉쇄하는 한편 자체 유통망을 확보하지 못한 소규모주류제조업자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

아. 주류과세체계

- 주정에 한해 종량세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주종은 종가세 체계로 과세

<표 34> 우리나라 주세현황

주 종		규 격	현행세율
주정		95도 이상 (곡물주정은 85 ~ 90도)	57,000원/kl(95도)
발효주	탁주		5%
	약주		30%
	청주		30%
	맥주		72%
	과실주		30%(소규모승인15%)
증류주	증류식(희석식) 소주, 위스키 브랜드, 일반증류주, 리큐르		72%
기타 주류	발효방법에 의한 제성주류로서 발효주가 아닌 것		72%
	발효에 의하여 숙성한 주류로서 탁주, 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 이외의 것		30%

* 주세액에 대한 교육세율 : 주세율 70% 초과 주류는 30%, 주세율 70% 이하 주류는 10%(단, 주정, 탁주, 약주는 과세 제외)

** 소규모 승인제조 :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농업인·임업인 또는 생산자단체가 제조하는 과실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고수량 이하의 것

- 주류에 붙는 세금은 주세 외에 교육세(주세의 30%)와 부가가치세 [공급가격(원가+주세+교육세)의 10%] 등이 있음

- 주세 및 교육세(소주, 맥주, 위스키 기준)

과세표준	세율(72%)	주세	주세액 × 교육세율(30%) 교육세
------	---------	----	------------------------

* 과세표준 :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때의 가격(수입주류 : CIF + 관세)

- 유통업소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과세표준	세율(10%)	개별 소비세	개별소비세액 × 교육세율(30%) 교육세
------	---------	-----------	---------------------------

- 부가가치세(거래단계마다 붙음) = 과세표준 × 세율(10%)

자. 주류 도수규제

- 주류에 대한 도수규제는 '95년 소주의 도수규제 폐지 이후 '02년 주정과 혼합주*를 제외하고는 도수규제 폐지
- 주정은 술 원료이므로 도수규제가 필요하며, 혼합주는 주종간의 혼동을 방지하고자 도수규제 실시
- * (혼합주) 주류의 발효·제성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또는 재료를 혼합하거나 첨가한 것으로서 알콜올분 도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수 범위내의 것

<표 35> 주류도수규제 현황

구 분	주세법 시행령 개정 전	'02년 개정 후
주 정	95도 이상	95도 이상
탁 주	3도 이상	-
약 주	13도 이하	
청 주	14도 이상	
혼합 주	25도 미만	25도 미만

2. 규제개혁 동향

가. 그간의 추진경과

- '49년 주세법 제정 당시 국내 주류산업에는 생산과 유통에 대한 면허제 등 주요 사항만을 규제
 - 국세청 발족('66년)과 주류업체 통폐합('73년) 추진 이후 이중삼중의 규제장치가 신설 또는 보완
 - ⇒ 생산·유통·광고 등 각종 분야의 규제 목적이 소비자보호 보다는 안정적 세수확보에 있어 주류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
- 주류시장개방 흐름에 대응하고 경제구조를 선진화하는 차원에서 '88년과 '98년, '08년 3번에 걸친 대규모 규제개혁을 추진
 - ① '88~'92년 기간 중 규제개선 내용 : 제조면허 개방을 비롯하여 생산방법, 주류규격, 도매업 및 유통 등 21개 분야의 규제를 개선하거나 폐지

<표 36> 주류규제개혁 세부내용('88년)

구 분	주 요 내 용	추진시기
제조면허	· 제조면허의 단계적 개방 : 주종별로 3단계 개방	'91.9
	· 민속주 제조면허제한 폐지	'88.12
	· 발효주 제조면허 폐지	'91.7
생산방법	· 소주용 주정배정제도 폐지	'92.12
	· 1제조장 1주종 생산원칙 폐지	'88.12
	· 혼합식 소주 제조 허용	'91.7
	· 소주의 첨가물 규제완화	'88.1
	· 청주의 백미 사용비율 제한 철폐	'88.7
	· 기타 재제주의 제조장별 생산종목 폐지	'91.7
주류규격	· 주종별 알콜 도수의 제한 완화(탁주, 청주)	'88.12
	· 알콜 도수 자율화	'91.7
	· 주류용기, 포장, 표시 등에 대한 규제완화	'89.6
도매업	· 주류도매업 신규면허 확대	'90.1
	· 주류도매장의 취급주종제한 폐지	'90.1
	· 주류도매장의 판매지역제한 완화(시군구→시도)	'90.1
	· 주류도매장의 판매지역제한 폐지	'92.1
유통	· 자도소주 판매의무제도 개선	'90.1
	· 자도소주 판매의무제도 폐지	'92.1
	· 민속주의 판매지역제한 폐지	'91.7
	· 일반주류도매상의 수입주류 취급 허용	'88.12

- ② '97~'99년 기간중 규제개선 내용 : 주정산업, 주류생산, 주류 수입·판매등 20개 분야 규제를 개선하거나 폐지

<표37> 주류규제개혁 세부내용('97~'99년)

구분	주요 내용	추진시기
주정산업	· 주정 신규면허 요건의 객관화 및 신규면허 허용 · 주정 판매제도 개선과 가격 고시제도 폐지 · 배정제도 폐지	'99.상반기 '99.상반기 2000
주류생산	· 탁주 신규면허 허용, 공급구역제한 철폐 및 첨가물 제한 완화 · 제조·판매면허 제한요건 객관적으로 규정 · 제조시설기준 대폭 완화, 탁·약주 제조용기 제한 최소화 · 주류 제조방법의 사전신고제 개선 · 탁주 등 주류별 알콜 도수 규제 완화 · 국산 주류상표의 필수 기재사항 축소, 문자크기 제한 폐지 · 리큐르 원액 제조·사용에 관한 규제 완화 ·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제도 개선 · 주조사 의무고용제도 및 활동 규제 폐지	'99.상반기 '99.상반기 '98.12 '98.12 '98.12 '98.10 '98.12 '98.12 '98.10
주류수입 판매	· 주류판매업 면허요건 합리화(진입제한 개선/인적요건 강화) · 주류판매업 면허를 12종류에서 6종류로 통합 · 우체국을 통한 민속주·농민주 통신판매 허용 · 주류 제조장 또는 판매장 이전시 사전신고 및 허가제 개선 · 주류판매업자의 판매가격 신고제도 폐지 · 전통주도매업 면허제도 도입 및 판매제한 완화	'98.12 '98.12 '98.10 '98.12 '98.12 '98.12
사업자 단체	· 주류업단체가 공동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규정 삭제 · 사업자단체 설립 및 가입제한제도 폐지	'99.상반기 '99.상반기

- ③ '08년 주류분야 규제개혁 주요내용 : 핵심규제의 개선보다는 주로 절차 간소화 차원에서 규제개선 추진

- 주요내용 : ① 주류제조자의 채무지급보증 사전승인제 폐지 ② 주류 면허 신청시 체납거부요건 완화 ③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 창고면적 기준 완화 ④ 청주에 대한 용도별 구분표시제 폐지 ⑤ 소규모맥주 판매방법 완화(외부반출 허용) ⑥ 주류제품규격 완화 ⑦ 주류판매 기록부 작성대상 축소 ⑧ 주류판매업 면허 검토시 지자체 의견조회 폐지

- 이러한 주류부문의 시장개방과 규제개혁노력의 결과 주류분야에 경쟁이 도입되는 등 일부 긍정적 효과를 거둠
- 그러나, 안정적 조세확보를 위한 주정생산·도소매 분야 핵심규제(주류면허제도 등)가 그대로 지속되고, 술에 대한 종가세 적용과 고도주 저세율·저도주 고세율 정책 유지로 시장기능을 왜곡

나. 주류분야 공정위의 규제개선 실적

<표 38> 주류분야 공정위 규제개선 실적현황

시 기	규 제 개 선 내 용
'88~'92년 (산업별 규제개선)	○ 주류도매업 신규면허요건 완화 - 거래약정서 1부 이상 제출요건 폐지 - 자본금 등 창고면적 차등화를 최저수준으로 단일화 ○ 소주·자도주 의무구입비율 완화 - 자도소주 판매제 폐지 후 '95년 부활(100분의 50을 자도 소주 제조장으로부터 구입) - 이후 '96년 위헌결정으로 폐지 ○ 주류도매상의 판매지역제한 개선 - 시·군단위 제한을 직할시·도로 광역화
'97~'99년 (경제구조 선진화를 위한 핵심과제 개선)	○ 주정 신규제조면허 허용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7조 '신규제조면허 금지' - 신규제조면허 금지규정을 삭제 ○ 주정판매제도 개선 및 가격고시제 폐지 - 신규 주정도매면허 금지규정을 삭제 - 주정가격고시는 가격상한제도로 하되, 2001년부터 폐지 ○ 탁주 신규면허 허용 및 공급구역 제한철폐 - 비살균 탁주의 경우 변질 등을 우려하여 주류제조장 소재지의 시·군내에서만 공급할 수 있도록 했으나, 저장·운송 수단의 발달로 변질될 우려가 없기 때문에 공급구역제한을 폐지 ○ 주류 통신판매의 금지 개선 - 판매창구를 한정하여 민속주, 전통주에 대한 통신판매를 허용하되 우체국과 같은 공공기관으로 제한 ○ 주류 제품별 규격제한 개선 - 다양한 주류의 제조가 가능하도록 알콜도수 규제 완화

시 기	규 제 개 선 내 용
'09~'10년 (경쟁제한 적진입규 제개선)	○ 주류납세병마개 제조업체 신규 지정 - 납세병마개 제조사 1개 업체(CSI코리아) 추가지정('10.6월), 추가지정에 따른 부작용여부를 평가한 후 지정확대여부 결정('11년중) ○ 주류제조업 면허기준 완화('10년 중) - 주류생산시설 용량기준을 대폭 완화 ○ 종합주류도매업 면허기준 완화('10년 중) ○ 주류의 통신판매 수단 추가허용 - 전통주제조자의 인터넷판매를 허용하고, 전통주 판매포털사이트를 운영

<참고> 막걸리산업과 규제개선

- 막걸리시장은 서울탁주(75%)와 (주)국순당(15%)이 전체 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업체는 지역을 기반으로 영세한 규모
 - 전국에 770여개의 막걸리 제조면허 보유업체가 있고, 실제로는 500여개 이상의 업체가 막걸리를 생산('09년 533개 업체 생산)
- 최근 막걸리산업 부흥의 의미
 - 막걸리는 저알콜 함유 기능성 주류로 건강증진에 기여하며, 국산원료 사용을 통해 국내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
 - * 10.4월 현재 막걸리 내수량(2만8830kl)은 전체 주류내수량(28만5749kl)의 10.1% 수준으로 전년도의 4.5% 수준에서 크게 증가
 - 외국산 와인 및 위스키 수입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수출품목으로 외화획득에 기여('10.4월 현재 막걸리 수출량은 1,275kl로 전년동월 대비 145.7% 증가, '09년 막걸리 수출량은 7404kl)
 - 우리 체질에 맞는 고유의 술로 건전한 음주문화 형성에 기여
 - *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약 13조 6천억원) 절감(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막걸리산업 규제 개선 경과
 - '98.10월 : 탁주의 신규제조면허를 금지하는 규정 삭제
 - '98.12월 : 주류 알콜도수 규제 완화(탁주의 경우 6도→3도 이상)
 - 2000년 : 탁주 공급구역제한제도(주류제조장 소재지 시·군) 폐지

- 2002년 : 주류 알콜도수 규제 완화(탁주의 경우 3도 이상 → 폐지)
- 2010.2월 :
 - ① 탁주 제조시설기준 완화(발효조 6kl→3kl, 제성조 7.2kl → 2kl)
 - * 발효조 : 곡물에다 누룩과 효모를 섞어 발효시키는 용기
 - * 제성조 : 발효된 술을 여과시키고 첨가물과 혼합해 상품으로 만들기 위한 용기
 - ② 탁주 제조자가 직매장을 설치하는 경우 시설기준(대지 500m² 이상, 창고 300m² 이상) 면제

IV. 해외사례

1. 미국의 주류제조 및 판매면허제도

가. 주류제조면허제도

- ☐ 주류제조시설에 대해서 주종별로 양조장건물, 시설, 용기 등에 관한 기준을 상세히 설정
 - 포도주 제조시설은 보세양조장, 보세저장소 또는 납세포도주 병포장 공장 등으로 분류 지정

<표 39> 미국의 주류제조시설 기준

구 분	제 조 시 설 기 준
포도주 제조시설기준	· 포도주 제조시설은 보세양조장, 보세저장소 또는 납세포도주 병포장 공장 등으로 분류 지정
증류주 제조시설	· 제조장의 물리적 보안장치에 대한 설명을 의무화, 주요 장비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
주류 제조장시설	· 제조장 건축물의 건축 및 설비상의 요건 규정 · 건물은 실용적인 재료들로 건축해야 하며, 세원이 확보될 수 있어야 함 · 제조장 소유자는 증류주 제조에 적합한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설비는 세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도 충족해야 함

* 출처 : 한국주류연구원, “주요 국가들의 주세 및 주류행정체계”, 2008

- 주류제조와 관련하여 주류 종류별 제조방법, 제조원료 및 첨가물료를 사전 신고하도록 규제하며, 주류상품에는 제품등급, 제조방법, 원산지, 알콜함유량 등을 기재하도록 함

나. 주류판매면허제도

- ☐ 연방주류관리법(The Federal Alcohol Administration: ACT)에 따라 제조된 주류의 재판매를 담당하는 도매·수입업을 하려면 TTB(알콜, 담배세 및 교역국)의 허가가 필요

- 맥주, 와인, 증류주 등 주류를 취급하는 소매업자는 연방정부의 법률 및 시행규칙의 요건을 충족해야 판매 가능
- 모든 소매업자는 정부에 주류반입금지와 수량, 구입처, 송장과 청구서의 기록을 갖고 있으며, 소매업자의 영업장이나 주류를 보관하는 장소는 TTB직원에게 의해 상시 감시를 받음
- 주정부는 주류의 판매 및 유통관련 활동을 통제하고자 법적 음주허용연령 및 허용유형, 주류판매점의 수, 광고제한, 판매가능일 및 시간 등을 규제
- 미국 18개주는 주정부가 직접 주류유통에 개입하여 전매제를 실시 중이며, 나머지 주는 주류의 생산 및 유통을 허가받은 민간사업자에게 주류 유통을 위탁하는 면허제도 실시
- * 미국의 경우 20갤런(75.7ℓ) 이상의 주류를 동일한 사람에게 한번에 판매하는 경우 판매날짜, 구매자의 주소와 성명, 판매주류의 종류와 수량 등에 대한 기록유지의무를 부과

2. 영국의 주류제조 및 판매면허제도

가. 주류제조면허제도

- 발효주 제조시설은 신고사항이며 증류주 제조면허를 받고자 할 때에는 시설기준이 적용
- 맥주제조면허는 사업용제조면허와 제한면허로 구분되며, 제한면허는 양조 면허자의 가정용 혹은 농장노동자 소비용으로만 맥주를 양조하는 경우 또는 감독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조건에 따라 부여

<표 40> 영국의 주류면허 현황

구 분	제 조 시 설 기 준
포도주 제조면허	· 주류제조면허를 소지하여야 함, 단 보세창고내에서 포도주 기 포를 생성하여 포도주를 생산하는 자는 예외
증류주 제조면허	· 제조면허를 소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류주를 제조할 수 없으 며, 증류업 면허는 발부된 후 매년 9.30일 유효기간이 만료 · 제조, 증류업자는 포도주, 맥주 등 발효주 도·소매상과는 직접 거래할 수 없음
맥주 제조면허	· 사업용제조면허와 제한면허로 구분

* 출처 : 한국조세연구원,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주세 및 주류행정에 대한 고찰”, 2007

나. 주류판매면허제도

□ 면허법 2003(the Licensing Act 2003)에 의해 주류판매를 규제

<표 41> 면허법 2003의 주요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유연한 판매시간	· 24시간 판매할 수 있으며, 일주일 내 판매할 수 있는 점포면허 의 유연한 판매시간 이용가능
단일 점포면허	· 각 규정의 단순화와 공무원을 줄이려는 목적에서 알콜, 공공엔 터테인먼트, 영화, 극장, 야간간이점포, 야간카페의 6종류의 점 포면허를 통폐합
점포면허	· 점포면허는 한번 면허를 발급받으면 사업기간동안 유효
인적면허	· 점포면허의 권한아래 알콜판매의 위임 및 알콜 판매를 하는 사 람에게 허용해주는 면허 · 면허는 10년동안 지속되고, 면허만료시 거주지역의 권한기관보 다 원래 면허를 신청했던 권한기관에 다시 신청

* 출처 : 한국조세연구원,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주세 및 주류행정에 대한 고찰”, 2007

3. 일본의 주류제조 및 판매면허제도

가. 주류제조면허제도

□ 신규 주류제조면허를 신청하는 경우와 시설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제

조시설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

- 주류제조자는 제조장의 위치, 제조 및 저장의 설비, 제조의 개시 및 중지, 제조예상수량 및 제조방법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전에 신고
- 매월분의 주류제성 및 출고수량, 매월말의 주류소지수량 및 월중에 주류를 제조장에서 출고하지 않은 경우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나. 주류판매면허제도

-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 판매면허로 도매업면허와 소매업판매면허가 있음
 - 주류도매업면허는 일반주류도매업면허(전 주류), 맥주도매업면허, 양주도매업면허(와인, 위스키, 브랜디, 리큐르 등), 특수주류도매업면허, 주류수출입 도매면허로 구분
 - 주류소매업면허는 일반주류소매업면허(전 주류), 통신판매주류소매업면허(토산주와 수입주로 한정)로 구분

<참고> 일본 주류시장현황

- '08년 기준 일본 주류시장규모는 주류출고액 기준으로 약 3조 6천 912억엔으로 추정('01년 : 4조 2천 155엔)
- 전체 식품산업의 규모는 증가('01년 : 23조 3천 124억엔 ⇒ '08년: 23조 8천 855억엔)하였으나, 주류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01년 18.1%에서 '08년 15.5%로 계속 감소하는 추세
- '07년 주류총생산액은 36,989백만엔이며, 15,870백만엔 상당을 수출(청주 : 생산액은 439,310백만엔, 수출은 7,048백만엔)
 - 출고액(단위 : 억엔) : ('01년)42,155 → ('05년)37,897 → ('08년)36,912

<표 42> 일본의 주류 종류별 생산실태

(단위: kℓ, 억엔)

구 분	2001년		2005년		2008년	
	생산량	생산액	생산량	생산액	생산량	생산액
청 주	949,068	6,186	729,458	4,772	651,600	4,244
합성청주	64,140	243	65,170	247	49,400	206
소 주	776,067	4,183	963,568	5,221	933,800	5,496
미 린	106,017	461	110,724	481	113,700	460
맥 주	4,777,660	19,817	3,613,177	15,020	3,170,000	13,670
과실주류	110,511	772	102,858	720	86,700	764
위스키	89,067	1,626	67,118	1,153	58,100	1,066
브랜드	13,284	306	7,537	174	5,800	139
스피리츠류	21,444	184	74,669	267	220,600	502
리큐르류	486,160	1,410	743,023	2,177	1,295,500	3,165
잡주	2,344,690	6,967	2,719,098	7,665	2,208,800	7,200
합계	9,738,108	42,155	9,196,400	37,897	8,794,000	36,912

* 출처 : 한국주류산업협회(주류산업 2009년 여름호)

4. 캐나다의 주류제조 및 판매면허제도

가. 주류제조면허제도

- ☐ 주류제조면허는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나. 주류판매면허제도

- ☐ 연방정부는 주류관리법에서 주류의 포장과 함유성분에 대해 규정하며, 주류의 판매에 대해서는 각 주별로 다소 상이하게 규정
- 온타리오주(캐나다에서 가장 큰 주류시장)의 경우 주류판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제
 - 19세 이하의 미성년자에게는 주류판매 금지
 - 술취한 사람에게는 주류판매 금지
 - 새벽 2시 이후부터 오전 11시까지 주류판매 금지 등

5. 프랑스의 주류제조 및 판매면허제도

가. 주류제조면허제도

- ☐ 모든 주류제조방법을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주정은 제조와 원료 사용에 있어 엄격하게 규제
 - 제조시설의 수량, 특성, 성능부품 등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내용과 다를 경우 벌금을 부과
 - 주류상품 기재내용을 철저히 규제하여 포도주는 원산지상표, 제조 방식, 천연포도주 용어사용 등 표기내용을 규제하며, 알콜음료는 회사명, 주소, 제품의 특성 등이 상표에 나타나도록 함

나. 주류판매면허제도

- ☐ 주류도매에 대한 면허제도는 없으며, 음료 및 주류의 일반인에 대한 판매는 공공건강법전을 통해 엄격하게 규제
 - 공공건강법전은 알콜이 포함된 주류를 포함한 음료의 종류에 대한 구분과 이에 따른 면허제도를 규정

<표43> 프랑스 소매면허의 종류

종 류	주 요 내 용
비알콜면허	제1종류(알콜 1~2도 이하의 과일·채소주스 등)에 해당하는 음료만을 제공해야 함
발효성음료면허	제1종류와 제2종류(포도주, 맥주, 사과주 등)에 해당하는 음료만을 제공해야 함
제한면허	제1종류, 제2종류와 제3종류(알콜 18도 이하의 천연포도주 등)에 해당하는 음료만을 제공해야 함
완전면허	모든 종류의 음료를 제공할 수 있음(증류주 포함)

* 출처: 한국조세연구원,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주세 및 주류행정에 대한 고찰”, 2007

6. 주요 국가들의 주류산업 규제현황

- ☐ 외국의 경우 국가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주류의 종류별 면허 제도를 유지하고 주류가격 및 판매를 규제
- 주류 판매면허를 주종에 따라 차등화함으로써 고도주에 대한 접근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대부분 주류판매 허용시간을 제한

<표 44> 해외 주류규제현황

국 가	전매 사업화	가격규제	종류별 면허발급	판매허용 규제	음주연령 규제	광고규제
미 국	○		○			○
일 본			○	○	○	
독 일	○					
프랑스			○		○	
이탈리아			○			○
캐나다	○	○	○	○		○
스페인					○	○
네덜란드			○			
스위스	○	○	○	○	○	○
벨기에			○			
스웨덴	○		○	○	○	○
노르웨이	○		○	○		○
오스트리아	○		○			○
덴마크			○		○	○
남아공			○		○	○
핀란드	○	○	○	○		○
아일랜드		○	○			○
뉴질랜드			○		○	
룩셈부르크			○		○	

* 출처 : Brewers Association of Canada, 국세청

- ☐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마약, 연초, 총기, 화약 등과 같이 주정도 세수 확보와 국민보건위생보호 차원에서 전매제도 혹은 면허제도를 채택하여 제조·유통을 엄격하게 관리

- 주정의 경우 전통적으로 북유럽국가(노르웨이, 핀란드 등)와 캐나다, 미국 일부 주, 일부 동유럽국가 등은 현재까지도 국가 전매제를 유지

<표 45> 해외 주정관리제도 현황

국 가	제 도	목 적	관리 주체	판 매 자
독 일	전매제	세수확보 농업정책	연방전매행정청	국가위탁 판매업자
스위스	전매제	국민보건 농업정책	연방알콜 관리국	알콜관리국의 허가받은 자
노르웨이	전매제	국민보건 세수확보	재무부 알콜위원회	알콜 전매공사
핀란드	전매제	국민보건 세수확보	보건복지부 알콜전매공사	알콜 전매공사
미 국	세제 (일부전매제)	세수확보 소비자보호	재무부 알콜· 담배·총포국(ATF국)	ATF국의 허가받은 자
일 본	세제 (공업용제외)	국민보건 유통관리	국세청 (재무부)	재무부의 허가받은 자
영 국	세제	세수확보	재무부	관세소비세청의 허가받은 자
프랑스	세제	농업정책 국민보건	농림부	농림부의 허가받은 자

* 출처 : 세계보건기구(WHO), 일본알콜핸드북

- 특히, 독일 및 스위스 등에서는 주정생산시 국산원료 사용을 의무화

<표 46> 독일·스위스의 주정관리제도 현황

구분	독 일	스 위 스
제조 면허	· 주정의 제조를 위하여는 연방전매행정청으로부터 제조면허를 받아야 함	· 연방정부가 증류주 및 알콜의 독점적 제조권한을 가짐
생산, 원료	· 제조업체의 연간 주정생산량 지정 · 거래업체가 사용가능한 원료의 종류를 제조업체의 지역적 위치에 따라 규제	· 자국내에서 재배한 과일을 원료로 사용
판매, 유통	· 모든 종류의 농산주정은 연방전매행정청에 출하되어야 함	· 연방알콜관리국에서 알콜에 대한 구입, 판매의 독점적 권한 보유
가격	· 연방전매행정청에서 주정출고가, 소매가 결정	· 연방알콜관리국은 정부가 지정한 가격에 따라 구입

* 출처 : 대한주정판매(주)

7. 규제완화를 통한 주류산업 육성사례⁵⁾

가. 일본의 주류규제완화

- 1872년 도입된 일본 주세법은 대표적인 징세편의 위주의 규제법이었으나, 수차례의 개정을 통해 제조 및 유통관련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주류 산업발전을 도모
 - (제조면허) 주류제조면허시 특정한 시설요건이 없이 품목별 연간 최저생산량 이상은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
 - 맥주는 '94.4월 주세법개정으로 연간생산능력요건을 2,000kl에서 청주·소주와 동일한 60kl로 기준을 낮추어, 지비루(지맥주: 地麥酒)라 불리는 미니 맥주회사가 270여개 생겨나 성업 중
 - 소주는 '08년 기준으로 881개 단식증류소주제조업체(증류식 소주)와 113개 연속식증류소주제조업체(희석식 소주)가 성업 중
 - (유통면허) 주류의 판매면허시 종류별 시설기준을 요구하지 않으며, 제조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주류를 자기영업장에서 판매할 때는 별도의 판매면허 없이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일본 주세법 제9조)
 - 연간 3,000kl 미만 생산업체는 '청소년에 해롭다'는 표시 의무를 전제로 통신판매를 전면적으로 허용
 - (세금체계) 다양해진 소비자들의 선호를 반영, 과세편의를 위해 주류 종류를 발포성주류, 양조주류, 증류주류, 혼성주류 4가지로 간소화('06.5.1)하는 대신 주류상품의 품목은 17개로 세분화
 - 새로운 주류분류 체계에 따라 주류간 세율격차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전환

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통주 국내의 산업현황 및 세계화 가능성 조사", (2009) 중외국의 전통주 성공사례 분석 부분을 주로 인용

* 「조세특별조치법」에 의해 연간 1,300kℓ이하 소규모 일본주업체가 생산하는 주류 중 200kℓ까지는 세금의 25%를 감면

<표 47> 일본의 주류 종류별 최저생산량 및 세율

주종	주류품목	최저 생산량(kℓ)	기본세율(kℓ당)	특별세율
발포성 주류	맥주	60	220,000엔	발포주(맥아비율 25 ~ 50%) 178,125엔
	발포주	6		발포주(맥아비율 25% 미만) 134,250엔
	기타발포성주류	-		기타발포성주류 80,000엔
양조 주류	청주	60	140,000엔	청주 120,000엔 과실주 80,000엔
	과실주	6		
	기타 양조주	6		
증류 주류	연속식증류소주	60	200,000엔 (21도 미만) 20도를 초과하는 1도당 가산액 10,000엔	위스키 370,000엔(37도 미만) 브랜디 370,000엔(37도 미만) 스피릿츠 370,000엔(37도 미만)
	단식증류주류	6		
	위스키	6		
	브랜디	6		
	원료용알콜	6		
	스피릿츠	6		
혼성 주류	합성청주	60	220,000엔 (21도 미만) 20도를 초과하는 1도당 가산액 11,000엔	미림 및 잡주(미림유사) 20,000엔 감미과실주 및 리큐르 120,000엔(13도 미만) 분말주 390,000엔
	미림	10		
	감미과실주	6		
	리큐르	6		
	분말주	6		
	잡주	6		

□ (청주) 국내 소비가 위축된 청주산업을 육성하고자 원료비율을 완화하고, 특정농업인에게는 제조면허요건을 유예

- (원료비율 완화) '03년 청주의 제조법품질표시기준을 개정하여 ① 특정명청주 요건에 쌀누룩 사용비율을 15% 이상, ② 순미주의 품질요건에서 정미보합비 70% 이하 규정을 삭제
- (최저생산량 기준 유예) 구조개선특구내에서 특정농업인이 자기가 생산한 쌀로 농가민박이나 농원레스토랑에서 판매하는 청주를 생산 판매할 경우 최저생산량 기준 유예

⇒ 지역생산 원료농산물과 물, 전통적인 제조방법 등을 기초로 독특한 상품을 개발, 지역축제 등 전통문화행사와 연계한 향토문화상품으로 판매되어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일본 5대 청주메이커와 대부분의 청주회사가 지역에 연고를 둠)

<참고> 청주 관련현황

- (정의) 청주는 알콜분 22도 미만인 것으로 ① 쌀, 누룩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것, ② 쌀, 고지, 물 및 청주지게미, 기타 법령으로 정하는 물료를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후 여과한 것, ③ 청주에 청주지게미를 첨가하여 여과한 것으로 규정(일본 주세법 제3조 제3호)
 - 청주종류는 일반청주, 특정명칭청주(본양조주, 순미주, 순미금양주, 금양주)로 구분
- (시장현황) 자국내 술소비량의 축소로 인해 청주출하량은 111만2천kl('98년) → 65만 7,270kl('08년)로 41% 감소(출하액 : 7,427억엔 → 4,244억엔)하였으나, 고급화·다양화를 통해 수출 시장을 개척
 - 일본 청주 수출증가량 : 9.5천kl('05년) → 11.3천kl('07년)
 - 현재 2000여개 청주 제조업체가 존재하며, 상위 10개 업체가 전체 생산량의 50%를 차지(상위 1 ~ 50업체가 전체 73% 생산)

나. 중국의 주류규제완화

- (규제완화) 중국정부의 '주류산업 발전 4대방침'에 따른 황주 발전 시책과 지방정부의 지원정책으로 황주산업의 발전을 견인
 - '87년 중국 정부는 「전국주류산업증산절약업무회의」에서 '고품질, 저도주, 다품종, 저소모'를 주류산업 발전 4대 방침으로 정하고 황주를 적극 발전시키기로 함(백주는 생산총량을 제한)
 - 동 방침에 따라 고도주인 백주에는 종가세와 종량세를 동시 부과함으로써 고세율 체계를 유지한 반면, 황주에는 종량세만 부과하는 저세율 체계를 실시
 - * 특히, 중국 국무원에서는 '98년 국가 연회용 주류를 고도주인

‘마오타이주’ 등 백주에서 저도주인 황주 중 ‘소흥가반주’로 대체

- '00년 중국 국가품질기술감독국에서는 소흥주를 중국 최초의 원산지 보호제품(현재는 지리표지보호제품)으로 비준
 - 지리표지제품 보호제도 실시로 소흥주의 정의, 품목 분류, 기술적 요구사항 등의 사항을 통일적으로 규정하여 엄격한 품질관리감독을 통해 품질경쟁력을 제고
- '04년 절강성 소흥시 인민정부에서는 ‘소흥황주산업진흥요강’을 제정하여 소흥황주 발전 목표와 정책조치 마련
 - 소흥황주 업종 진입제한을 완화(조건을 갖춘 지역에서 시장진입 제한 완화), 조건을 갖춘 기업의 소흥황주산업에 대한 투자 허용, 소흥황주의 생산과 판매 관리감독 강화로 소흥황주의 품질 제고 및 유통질서를 확립

<참고> 소흥주 관련현황

- (정의) 소흥주(15도 이하)는 중국 국가표준 GB/T 17946-2008[지리표지산물 소흥주]에 의해 “우수한 품질의 찹쌀, 밀과 소흥 특정지역내의 감호주를 주요 원료로 독특한 기술로 발효 양조된 우수 품질의 황주”로 정의
 - 소흥주 종류는 소흥원홍주, 소흥가반주, 소흥선양주, 소흥향설주로 구분
- (시장현황) '08년 황주 생산량은 220만톤이며, 이중 45만톤(20.5%)을 소흥에서 생산
 - 소흥주 생산량은 30만톤('06년) ⇒ 40만톤('07년) ⇒ 45만톤('08년)으로 해마다 증가
 - 전국의 황주 생산기업은 약 500개로 전체 주류 생산기업 총 수의 약 5.5% 차지하고, '03~'07년간 10위안이하 저가황주 소비량은 감소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비해 고급 황주 소비량은 증가

다. 독일의 주류규제완화

- (규제완화) 규제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육성 발전과 통제를 통해 주

류시장을 관리하고 국민건강보호차원에서 고도주에는 고세율, 저도주에는 저세율 적용

- (소규모 생산업체 규제완화) 전략적으로 보호·육성할 필요성이 있는 영세업체 등에는 차등과세나 면세를 적용

- 맥주 연간 생산량이 4,000kl이하인 영세업체는 추가적으로 차등과세*를 적용

* 4,000kl 이하 : 세율의 75% / 2,000kl 이하 : 세율의 70% / 1,000kl 이하 : 세율의 60% / 500kl 이하 : 세율의 50%

- (제조면허 완화) 주류면허 및 제조시설 등에 관한 규정들을 완화함으로써 주류산업 진입을 용이하게 함

- 우리나라와 미국과는 다르게 맥주제조 허가증 발부를 쉽게 내주는 등의 정책적 배려를 통해 산업을 육성하는 반면 주류제조에 사용되는 원료와 제조방법에 관한 규정들은 국민건강보호차원에서 엄격히 통제

<참고> 맥주 관련현황

□ (맥주시장) '08년 기준 맥주관련 연간 출고량은 1,200만kl(우리나라 180만kl의 약 6.6배)에 달하고 연간 총매출은 82억 유로(약 14조원)로 독일산업의 큰 비중 차지(관련 산업에 약 3만명 고용)

- '07년 총 154만kl의 맥주를 수출('00년: 105만kl)하였고, 56만kl를 수입('00년: 3,689kl)

- 연간 생산량 100kl 이하 생산업체가 전체 맥주업체 중 44.2%를 차지하는 등 소규모 맥주업체가 전국적으로 산재

<표 48> 독일의 맥주산업현황

구 분	단 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업체수	개	1,289	1,275	1,281	1,281	1,289	1,302	1,319
판매량	십만kl	107.8	105.6	105.6	105.4	106.8	103.9	102.9
출고량	백kl	107,600	105,990	108,366	107,678	104,315	120,161	-
수출량	백kl	11,169	12,232	14,555	13,713	14,896	15,716	15,210
수입량	백kl	3,661	3,066	4,399	5,413	6,429	6,972	6,445
소비량	백kl	100,622	97,188	95,682	95,080	95,492	91,885	91,132

V. 경쟁 및 소비자이슈 도출

1. 경쟁촉진을 위한 규제개선 과제

< 진입 규제 >

가. 주류제조업 시설기준 완화

- ☐ 주류제조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주류 종류별 엄격한 제조시설기준을 갖추도록 함(주세법 제6조 제1항 및 주세법 시행령 별표 3)

<표 49> 주류별 제조시설 기준 현황

구 분	주정	탁주 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	희석식 소주	증류식 소주
시설기준 (발효조)	550 kl 이상	3 kl 이상	6 kl 이상	1,850 kl 이상	21 kl 이상	130 kl 이상	6 kl 이상
술병환산치 (병)	-	4,300 /700ml	18,000 /330ml	3,700,000 /500ml	28,000 /750ml	360,000 /360ml	10,000 /600ml

- ☐ 대중주(희석식 소주, 맥주)의 제조시설기준이 과도하여 대규모기업(소주는 10개사, 맥주는 2개사만 존재)을 제외한 중소기업의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해짐으로써 다양한 주류가 출현하지 않음

⇒ 외국보다 주류별 제조시설 기준이 과도하게 높게 설정되어 상당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므로 대폭 완화할 필요(예: 희석식 소주, 맥주 각각 60kl 이상)

- * 독일·프랑스 : 발효주의 제조허가시 의무적인 제조시설 기준요건을 설정하지 않고 주류제조에 사용되는 시설만 신고
- * 일본 : 시설기준에 대한 제한 없이 최저 생산수량만 규제(맥주는 '94년 최저생산량을 2000kl → 60kl로 대폭 완화함으로써 '09년 현재 약 270여개의 맥주제조사가 존재)

<표 50> 일본의 주종별 최저 생산량 기준 현황

주 종	최저 생산량	비 고 (술병환산치)
청주, 합성청주, 소주(증류식·희석식), 맥주	60kℓ	120,000병 / 500ml
미린(조미료로 쓰이는 맛술)	10kℓ	-
과실주류, 위스키류, 주정류, 리큐르, 잡주	6kℓ	8,000병 / 750ml

<참고> 주류제조 진입규제개선 현황

- 주류 생산시설 용량기준 대폭 완화('10.12.31일까지, 주세법 시행령 개정)
 - ⇒ (기대효과) 경쟁력은 있으나 자본이 부족한 주류제조자의 신규진입이 촉진되고, 소자본으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탁주·약주의 제조시설기준(발효조) 완화 : 6kℓ이상 → 3kℓ이상('10.2월)

나. 종합주류도매업 면허기준 및 면허 수 제한 완화

- 국세청장은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수를 해당지역(시, 군)의 인구 수, 주류 소비량 및 판매장 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한(주세법 제10조)
 - 시·군별 신규면허허용 업체수는 총 주류도매업 매출액 중 종합주류도매업체가 차지하는 비율에 전년 주류출고량, 전년 시·군별 주류 매출액 및 시·군별 인구수를 감안하여 산출된 시·군별 허용범위(T/O)에서 전년 면허업체수를 차감하여 산출(주세사무처리규정 제13조)
 - ⇒ 지역 T/O제는 주류도매업 시장의 신규진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상당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므로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자본금 및 창고시설*을 갖추도록 제한(주세법시행령 §9 별표 5)

* 인구 50만 이상 시: 자본금(1억원), 창고(165m³)/기타: 자본금(5천만원), 창고(66m³)

⇒ 종합주류도매업 면허기준을 최소한의 수준(예 : 자본금 5천만원, 창고시설 66㎡)으로 완화할 필요

〈참고〉 종합주류판매 진입규제개선 현황

- 종합주류도매업 면허기준 완화('10.12.31일까지, 주세법 시행령 개정)
- ⇒ (기대효과) 사업자 부담경감을 통한 창업활성화 및 경쟁촉진

다. 주류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 확대

-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납세병마개 제조시설을 갖춘 자를 납세병마개 제조자로 지정(주세사무처리규정 제110조)
 - 납세병마개는 납세증명표지의 하나로 주류제조자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자가 제조한 병마개를 사용해야 함(주세법 시행령 제57조)
 - * 납세병마개제도는 전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시행되는 제도로 삼화왕관('72년 지정)과 세왕금속공업('85년 지정)만 납세병마개 제조업자로 지정된 상황
 - 제조 경험과 제조시설 구비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납세병마개 제조업자로 지정되기 어려워 진입장벽으로 작용
 - * '85년 이후 장기간에 걸쳐 2개 업체만을 납세병마개 제조업체로 지정함으로써 렌트(독점이윤)를 향유하는 구조 고착화
- ⇒ 경쟁 활성화를 위해 지정업체를 확대하는 내용의 규제개선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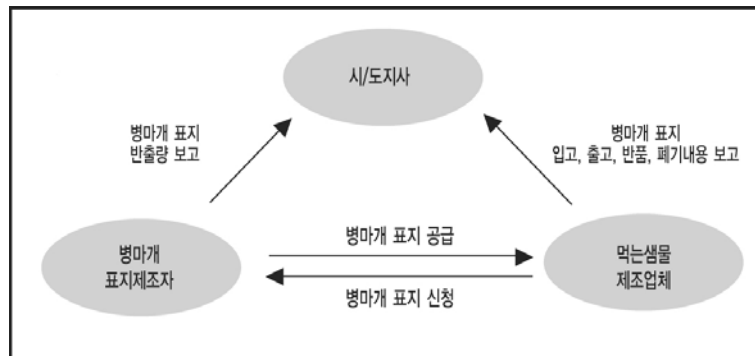
〈참고〉 주류납세병마개 진입규제개선 현황

- '10.2월 주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업기간이 폐지되었고 '10.4월에는 '납세병마개 제조자 시설기준 고시'가 개정되어 제조시설기준이 대폭 완화
 - 제조설비기준이 종래 시설기준의 1/2 ~ 1/3수준으로 완화되었으며, 1개 종류의 병마개를 생산할 수 있는 제조설비를 갖춘 업체도 지정이 가능
 - 주류납세병마개 제조업체 1개사 추가 지정(CSI코리아(주), '10.6월), 추가지정에 따른 부작용 여부 평가 후 지정확대여부 결정('11년 중)
- ⇒ (기대효과) 주류제조자의 다양한 병마개선택권을 보장하고 사업자간 경쟁촉진 및 병마개 제조기술 향상 도모

〈참고〉 먹는샘물(생수)의 수질개선부담금 납세증명표지제도

- 먹는샘물업체의 유통질서문란을 방지하기 위해 먹는샘물의 병마개에 수질개선부담금 납부증명표지를 하도록 하는 표지제도 시행('00년 시행)
- 환경부장관이 병마개표지제조업체를 지정(한국샘물협회)하여 수질개선부담금을 보전 (지정요건 : 비영리활동, 제조장, 검사실 등 부대시설, 인쇄, 자동계수기 보유)

<그림20> 수질보전개선부담금 납부증명체계



⇒ 먹는샘물의 병마개를 제조하는 업체는 현재 14개이며, 먹는샘물제조업체와의 생산계약 등을 통해 병마개 제조가능(별도규제 없음)

〈 사업활동제한 규제 〉

가. 주류의 첨가물료 사용 제한 완화

- 주류제조에 필요한 원료 및 첨가물에 대한 허용품목을 열거하여 임의 사용을 제한(주세법 시행령 제2조)
- 원료 및 첨가물료의 사용제한은 소비자의 기호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주류의 개발과 주질향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 주류첨가물료 폐지 또는 완화에 대해 업계의 의견은 상반

- (시장점유율이 높은 소주제조사) 첨가물료 제한 폐지는 주종의 변경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현행 주세체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현상유지 하는 것이 바람직
- (약주제조사) 소비자의 기호를 충족하고 경쟁력을 갖춘 제품개발을 위해 첨가물의 사용범위 확대 필요

⇒ 소비자의 다양한 기호 충족, 주질향상, 글로벌 경제하에서의 기술축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현행 사용가능한 첨가물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예: 천마, 옷, 음양곽 등 한방약재 첨가 허용)으로 개선할 필요

나. 주정가격 신고제 개선

- 주정업체 등은 주정 출고가격 및 판매가격을 국세청장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시 제조(판매)원가계산서와 소관 주류업단체장의 출고(판매)가격 검토의견서 등을 제출하도록 함(주세사무처리규정 제65조)
- 주정제조업자 및 판매업자는 주정 출고가격 및 판매가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일로부터 2일 이내에 국세청장에 신고
- 사업자단체가 주정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사업자단체를 통하여 주정업체간 가격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음

* 실제 주정업체의 대한주정판매(주)에 대한 공급가격은 거의 비슷한 수준

<표 51> 주요 주정업체의 대한주정판매(주) 공급가격

(단위 : 원/드럼)

구 분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발효주정	335,541	335,600	335,646	335,680
정제주정	260,092	260,138	260,355	260,377

⇒ 주류업단체장의 검토의견 첨부 제도를 폐지하거나 객관성 있는 전문 연구기관 등의 검토의견을 첨부하도록 개선할 필요

* 특히, 주정외의 주류에 대한 가격변경 신고시에는 주류업단체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지 않음

다. 주정원료 및 생산량 배정제 개선

□ 주정원료 및 생산량은 정부와 업계간 협의를 통하여 매년 결정

- 국산원료(정부미, 보리, 고구마 등)에 대한 사용량을 정부(농림부, 국세청)와 업계간 협의를 통하여 결정하며, 이를 위해 한국주류산업 협회에서 해당연도의 생산량 및 원료수급 계획을 수립
- (발효주정) 국산원료 사용량을 우선 배정하고 부족한 원료에 대해 타피오카를 수입하여 사용

<표 52> 2008년도 발효주정 원료 사용량

구분	발효주정 생산량(드럼)	국내산 농산물(톤)					수입산(톤) 타피오카
		합 계	쌀보리	겉보리	절감	현미	
수량	812,756	193,653	25,100	15,770	1,643	151,140	163,028
비율	100.00%	54.29%	7.04%	4.42%	0.46%	42.37%	45.71%

- (정제주정) WTO 협상에 의한 의무수입물량(MMA: Minimum Market Access; 최소시장접근⁶⁾)인 수입주정을 우선 배정하고, 부족한 원료에 대해서는 수입 조주정 물량을 배정

6) 의무수입물량(MMA)이란 시장개방을 유예한 품목에 대해 시장개방시까지 국내 소비량의 일정비율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물량을 의미함

* 2008년에 수입된 수입주정 MMA물량은 총 51,275드럼

□ 주정제조 회사별 생산량 배분은 전년실적을 기준으로 증감되는 양에 대해 20%는 균등배분하고 80%는 비율 배분

○ 회사별 원료량의 배분은 각 회사별 발효, 정제주정 점유비에 따라 배분량을 결정

⇒ 현재 주정생산량 및 원료배정을 정부가 정해줌으로써 사업자의 핵심적인 사업활동을 제한하고, 업체간 자율경쟁을 저해할 가능성이 큼

〈개선방안 : 주정원료 및 생산량 배정제의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

(1단계) 주정회사별 주정생산량 배정제도를 폐지하되, 국산원료 배정제도 및 국산원료 배정과 연계한 수입 조주정 배정제도는 현행체계 유지

- 주정업체는 수입원료(타피오카)를 이용한 발효주정의 생산량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됨으로써 주정업체간 경쟁 활성화⁷⁾

* 국산농산물 배정제도를 유지함으로써 농민소득 보장 지속

(2단계) 중국과의 FTA체결 등 농산물 개방 여건변화 등에 맞추어 국산 농산물 배정제도의 폐지를 중장기적으로 검토

라. 소주출고가격 변경에 대한 사전 행정지도 개선

□ 주류출고가격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2일 이내에 출고가격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세청은 특정업체에게 개별적으로 소주 출고가격 인상률 등을 사전에 승인해주는 행정지도 실시

7) 일부 주류에 주정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등 주정남용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 국가차원의 주정관리가 필요하므로 주정생산량 배정제 폐지 등 규제개선에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음

<참고> 관련 규정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65조(주류의 가격)③주정이외의 주류의 제조장출고가격(소규모맥주는 판매가격)을 변경(신규포함)하는 자는 변경일로부터 2일 이내에 출고가격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 이러한 행위는 ① 주류출고가격을 사전신고제에서 사후신고제로 변경한 규제개혁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② 주류제조업체의 가격결정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며, ③ 소주제조업체들의 카르텔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음

- * 주류출고가격 신고방식은 '99년까지 사전신고(변경일 2일 전까지 신고) 방식이었으나,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의해 1999.9.1.자로 사후신고(변경후 2일 이내 신고) 방식으로 변경

⇒ 국세청의 소주출고가격 변경시 행정지도는 주세보전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사후적·제한적으로 실시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

마. 주류제조자의 직접 주정구입시 사전승인제 개선

□ 주류제조자가 주정제조자로부터 주정을 직접 구입하거나 수입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장의 사전승인 필요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57조 제4항)

□ 주정사용자의 주정구입에 대한 선택권을 제한함으로써 주정제조업체 간 가격경쟁자체가 발생할 수 없도록 담합을 조장하고, 경쟁을 통한 경영효율이 제고되지 않아 소비자 후생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 '01년 규제가 완화되어 주정제조업자가 주류용 주정을 수요자에게 직접판매하거나 대한주정판매(주)에게 판매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나, '06년 사전승인제를 통해 규제강화

⇒ 주류제조자의 직접 주정구입시 국세청장의 승인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⁸⁾

8) 사전승인제 폐지로 직거래를 무한정 허용할 경우 저가 수입주정 대체로 국내 주정산업이 붕괴되고, 주류제조회사와 주정회사간 내부거래 증가로 부정유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음

바. 막걸리 취급 및 판매용기 제한 완화

- i) 종합주류도매업자의 일반탁주(생막걸리) 취급을 금지(주세사무처리 규정 §69)하고, ii) 막걸리 판매용기의 크기를 2ℓ 이하로 제한(주류의 제조, 저장, 이동, 원료, 설비 및 가격에 관한 명령위임고시)
 - 일반탁주의 취급이 가능한 특정주류도매업자는 대형제조사의 특정 제품만을 전문으로 취급함으로써 신규제조사 제품의 유통 활성화가 곤란
 - * 종합주류도매업자는 주정을 제외한 모든 주류를 취급할 수 있는 도매업자로 서울종합주류 등 전국에 1,196개 면허업체가 활동중
 - * 특정주류도매업자는 탁주, 약주, 농민주, 민속주 등만을 한정하여 취급할 수 있는 도매업자로 안양합판장 등 전국에 1,512개 면허업체가 활동중
 - 용기제한으로 포장·물류비용이 많이 소요되며, 대용량의 막걸리를 선호하는 소비자의 선택권 제약
 - * 길흥사 및 농어민 등 실수요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10ℓ 이상의 용기사용이 가능하나, 일반 판매용은 캔제품(350mℓ), 페트병제품(750mℓ, 1000mℓ) 등 2ℓ 이하로만 유통
- 유통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막걸리 유통을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
 - i) 종합주류도매업자의 일반탁주 취급을 허용
 - 일반탁주의 유통경로가 다양해짐에 따라 유통업체간 경쟁촉진 및 신규 탁주제조사의 판로가 확대
 - ii) 막걸리 판매용기 크기 제한을 완화(예: 2ℓ 이하 ⇒ 10ℓ 이하)
 - 대용량의 막걸리 유통으로 포장·물류비용 절감 및 다양한 용량의 막걸리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

- * 수출용 막걸리의 경우 판매용기 제한규제가 폐지('10.4월)
- * 일본의 사케나 중국의 소홍주는 특별히 판매용기를 제한하지 않고 다양한 용량으로 판매

2. 사업자의 경쟁제한행위 유형

가. 개요

- 04년 이후 주류분야와 관련하여 공정위에서 경고 이상 처리한 사건은 41건
 - 거래거절행위 6건,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1건, 거래상지위남용 1건, 부당한 공동행위 4건, 부당한 광고행위 5건, 하도급법 위반 10건 등

<표 53> '04년 이후 공정위 조치실적(경고 이상)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6월	계
거래거절행위	2		3		1			6
거래상지위남용행위				1				1
부당한 공동행위				1		1	2	4
사업자단체금지행위	2					1		3
부당한 경품류제공행위				1	1			2
기업결합행위			1					1
부당한 광고행위	2			2	1			5
하도급법 위반행위	3	1	2	2	2			10
기타 위반행위	1			1		6	1	9
계	10	1	6	8	5	8	3	41

* 자료 : 공정위 Think Fair

** 기타 위반행위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약관법

나. 주요심결사례 분석

① 거래거절 및 거래거절강요행위(사업자단체 포함)

- 부산·경남지역 2개 주류도매협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2004.7.31)
 - 부산청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경남울산지회 및 부산주류도매업협회가 자신들의 구성사업자들의 기존 도매가격보다 낮게 판매하는 주류도매업자(청해주류상사)에 대하여 주류제품의 공급을 중단하도록 주류제조회사에게 요구하여 하이트·대선이 주류출고를 중단(과징금 119억 부과)
- 진로발렌타인스무역(주) 및 디아지오코리아(주)의 거래거절행위에 대한 건(2006.8.25)
 - 진로발렌타인스무역(주) 및 디아지오코리아(주)가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인 진양물산과 신규거래약정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류협회와 다른 도매업자들이 진양물산과의 거래를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주류공급을 거절하였음(시정명령)

② 거래상지위의 남용행위

- (주)천년약속의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에 대한 건(2006.7.3)
 - (주)천년약속은 김해 및 강서 대리점에 대하여 부당하게 제품공급을 중단하고, 신고인의 영업지역을 피조사인의 직영체제로 전환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음(시정명령)

③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

- (주)진로의 부당한 경품류제공행위에 대한 건(2007.7.20)
 - (주)진로 대전지점은 (주)진로의 소주인 "참이슬 fresh"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소비자 현상경품을 실시하였는 바, 소비자현상 경품의 총 합계금액이 진로소주 판매금액의 10%나 될 정도로 과도함(경고)

- (주)무학의 부당한 경품류제공행위에 대한 건(2008.12.10)
 - (주)무학은 자사의 소주제품(좋은데이)의 소비자현상경품행사를 진행하면서 예상매출액의 1%를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할 것을 제의함(시정명령)

④ 경쟁제한적 기업결합행위

- 하이트맥주(주)의 경쟁제한적 기업결합행위에 대한 건(2006.1.24)
 - 하이트맥주(주)가 (주)진로의 주식 51.2%를 취득하고 05.8.5. 신고(시정명령)

⑤ 부당한 공동행위

- 안동지역 8개 종합주류도매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2009.7.24)
 - 경일주류 등 안동지역 8개 종합주류도매업자는 유흥음식점에 공급하는 국내산 위스키 및 맥주의 도매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이와 동일 또는 유사하게 인상(시정명령, 과징금)
- 11개 소주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2010.6.16)
 - 진로, 두산 등 11개 소주업체들이 2차례 소주출고가격 인상 및 소주 유통과정에서 경품 지급조건, 판촉활동 기준 등을 합의(시정명령, 과징금)

⑥ 부당한 광고행위

- 오비맥주(주)의 부당한 표시행위에 대한 건(2004.11.9)
 - 오비카스맥주병 라벨에 “국내유일의 100%비열처리맥주”라고 표기하고 있어 사실과 다른 허위 과장광고를 함(시정명령)
- (주)두산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건(2006.7.26)
 - (주)두산이 자사의 소주제품(처음처럼)과 경쟁사제품에 대해 신문

광고를하면서 경쟁상대방은 흉내만 내는 처음처럼의 짝퉁이 될뿐
입니다 등으로 경쟁상대방을 비방(시정명령)

⑦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 대선주조(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2006.12.11)
 - 대선주조(주)가 자신이 제조하는 소주의 구성에 부수되는 스티커
상표 등을 수급사업자인 양지사 등 6개제조사에 제조위탁하면서
어떠한 서면도 교부하지 아니함(시정명령)

3. 소비자 보호 이슈

가. 소비자피해 청구현황

- '09.10월말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주류관련 소
비자 피해구제청구는 총 15건이 접수
 - 피해구제 청구건 중 이물질 혼입이 9건(60%)을 차지

<표 54> 최근 3년간 주류관련 피해구제 접수현황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10.31)	계
소주	-	2	2	1	5
맥주	4	2	1	-	7
탁주(막걸리)	-	-	-	1	1
양주	-	1	1	-	2
계	4	5	4	2	15

* 자료 : 한국소비자원

<표 55> 피해유형별 현황

구 분	이물질 혼입	개봉 중 상해	정품지급 미이행	배송 중 파손	위조여부 확인	계
소 주	2	1	2	-	-	5
맥 주	6	1	-	-	-	7
탁주(막걸리)	1	-	-	-	-	1
양 주	-	-	-	1	1	2
계	9	2	2	1	1	15

* 자료 : 한국소비자원

나. 주요 소비자 이슈 : 주류의 유통기한표시 등 정보제공의 문제

□ 국내맥주제조사는 수출용 맥주에는 대부분 유통기한을 표시하나, 국내에 유통하는 맥주에는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음

○ 「식품위생법」상의 “유통기한” 표시는 제품의 안전과 관련한 중요한 기본정보임에도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한 법조항을 적용(식품위생법 제10조 및 식품등의 표시기준 제7조)하여 맥주의 유통기한을 생략

* '07년 한국소비자원의 조사당시 하이트맥주(주)는 수출대상 13개국 중 8개국에 유통기한을 표시하였고, OB맥주(주)는 수출대상 18개국 중 5개국에 유통기한을 표시

* 독일, 스웨덴, 중국 등은 맥주에 유통기한을 표시하도록 의무 부과

<표 56> 외국의 맥주 유통기한 표시실태 현황

구분	유통기한 표시	비고
독일	3 ~ 6개월로 표시	-
스웨덴	6개월로 표시	-
중국	캔맥주 : 8 ~ 12개월 병맥주 : 4 ~ 6개월	「중국인민공화국식품위생법」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식품의 판매를 금지 (위반시 500~1만위안 벌금부과)

* 자료 : 한국소비자원

- 주류유통과정에서 이물질혼입, 유통기한 미비 등으로 인해 변질된 주류를 음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비자 위해사례가 빈번하게 발생
- 한국소비자원의 『맥주의 표시 개선』 사업결과에 대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05년~'07년까지 맥주피해사례 161건 중 변질에 따른 부작용(장염, 구토, 복통, 설사 등)이 37.9%를 차지

<표 57> 맥주관련 위해실태(07년 기준)

구 분	변질	이물질 혼입	폭발/ 파손	유통기한 문의	기타	계
2005년	21	20	6	4	1	52
2006년	18	12	10	3	2	45
2007년	22	20	13	4	3	64
계	61	52	29	11	6	161

* 자료 : 한국소비자원(07.9.18)

- * 맥주는 발효주 종류로서 변질될 우려가 있고, 맥주의 변질은 생산된 지 오래되어 장기간 유통되어 발생하는 문제이므로 맥주의 유통기한은 제품의 안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임
- * 외국은 맥주제품이 생산되면 저온저장이 가능한 차를 이용해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콜드체인시스템)하나, 국내에서는 그런 시스템 없이 도매상에서 야적해버리는 경우가 많아 변질될 가능성이 있음

<참고> 맥주 유통기한 표시관련 추진현황

- 한국소비자원은 맥주에 대한 위해정보가 급증함에 따라, 안전하고 깨끗한 맥주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국내 맥주사(하이트맥주, 오비맥주)와 「사업자의 자율적 안전개선 사업」을 추진
- '06년 국산맥주사가 자사제품에 “음용권장기한(혹은 권장음용기간)을 1년으로 자율적으로 표시하기로 합의

- ⇒ 소비자는 “음용권장기한”표시를 “유통기한”표시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고, 맥주의 안전성을 가늠할 수 있는 정보로서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
- * “음용권장기한”은 맛이나 신선도가 마시기에 적합한 기간으로 기한이 지나도 판매나 섭취가 가능하며 안정성 문제와 커다란 관련이 없는 반면에,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으로 기간이 경과되면 판매할 수 없으므로 안전성과 직접적 연관
 - 한국소비자원은 국산맥주에 “음용권장기한”대신 “유통기한”을 표시하도록 개선방안을 제시('07.7월)
 - *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소비자의 식품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식품등의 표시 기준’을 개정하여 '09.5.1일부터 종전의 맥주 표시 기준을 제조일자 표시 의무 → 품질유지기한으로 변경('07.10월)

□ 주류의 원료 함량, 원산지 표시, 첨가재료 명칭 표시 등도 법적 의무화하여 소비자에 대해 정확한 정보제공 필요

- * 맥주, 탁주, 약주의 경우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선택 표시, 주류의 원료명칭 및 원료함량 표시, 원산지 표시, 첨가재료 명칭 표시 등을 의무화('10.7.1.시행)

<참고 1>

한국 주류산업의 발전과 주류정책 변화

1. 근대이전

- 고려말 소주가 유입된 이후 주류의 다양화와 함께 음주층이 확산되었으나 독자적인 산업분야로 발전하지는 못했음
 - 국가의 주류정책은 금주령*을 통한 식량수급에 중점
 - * 1375년 최초로 소주금주령이 내려진 이후 금주령은 빈번하게 실시

2. 일제시대

- 주세법 제정(1909) 및 주세령 공포(1916) 등 세수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등 주류행정이 획기적으로 개선
 - (주세법 주요내용) 주류제조면허제 시행, 주류제조장의 제조석수에 따라 주세부과, 민가의 자가용 주류에 대한 과세
 - * 1916년~1933년 기간 동안 주류관련 조세징수액이 13배 증가

3. 해방이후 : 주류산업의 침체기

- (미군정기) 주세율을 올려 음료업자의 자발적 폐업을 유도하고 미곡을 사용한 양조를 금지시키는 정책을 통해 주류제조업이 위축
- (정부수립후) 양곡확보를 위한 주류제조억제정책을 시행하는 한편 잡곡류를 주원료로 한 주정생산이 본격화 됨
 - 탁주와 소주의 원료인 주정생산량이 주류소비에 미치지 못한 관계로 밀조주와 부정외래주, 불량주류가 범람

- 주세법 역시 단순한 세원 확대와 포착에 중점을 두었으며, 출고수량에 따른 종량과세법을 적용

4. 1960년대의 주류산업

- (실태) 고구마 소비촉진정책으로 주조에 잡곡 사용을 금지함에 따라 소주의 출고량은 감소한 반면 탁주와 맥주의 출고량은 증가
 - 정부의 꾸준한 고구마증산정책으로 인해 '60년대 중반부터 주정생산량이 증가
- (주류정책) 주류유통구조와 주세체계 확립에 중점
 - 탈세방지를 위해 일부주류(청주 등)에 납세증지제도를 실시하고, 주류제조자간 과당경쟁 방지차원에서 주류가격을 규제

5. 1970년대의 주류산업

- (실태) 고도성장기에 들어서면서 주류소비가 급증하고 이에 따라 주정원료의 품귀현상이 발생
 - 주정원료를 타피오카 등으로 다변화하여 주정생산량을 증대
- (주류정책) 각종 주류면허행정 실시를 통해 주류행정체계를 강화하고 주류산업정책을 통한 지방산업 육성
 - 납세병마개 사용('73), 주정을 제외한 전 주류에 종가세 적용, 주류의 품질 유지 및 제조업체 난립방지를 위한 주류면허 통폐합('72), 자도주 50%의무구매제 실시('76) 등을 시행

6. 1980년대 이후의 주류산업

- (1980~'85년대) 자도주의무구입제 완화로 소주업계의 경쟁은 치열해진 반면, 호경기와 소비층의 저변확대로 맥주가 대중주로 정착

- (1986~'90년대) 국민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위스키, 청주, 맥주 등의 고급주의 신장세가 지속되고 저도주 선호현상이 두드러짐
 - 소주면허 전면개방('93)으로 국내 주류시장의 경쟁이 격화되고, 소주와 맥주시장이 전체 주류 중 87%를 차지하는 등 대중주로서의 입지를 강화
- (2000년대 이후) 1999년 한-EU 주세협상 패소로 '00년 증류주의 세율이 72%로 소주와 동일해짐에 따라 소주 소비량은 14%의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위스키 소비량은 50%의 큰 폭으로 성장
 - 최근 웰빙바람으로 건강과 레저활동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주류시장이 다양화, 고급화, 세분화 및 저도화되는 추세

<참고 2> 주류 제조면허를 위한 일반적 시설기준

주 류 별	시 설 구 분	시 설 기 준
가. 주정	1) 발효 및 증류시설 가) 발효조 총용량 나) 술덧탑 다) 정제탑 2) 시험시설 가) 현미경 나) 향온향습기 다) 간이증류기	550kl 이상 1기 이상 1기 이상 1,000배 이상 1대 0~65℃ 1대 1대
나. 탁주 및 약주	1) 담금·저장·제성용기 가) 담금(발효)조 총용량 나) 제성조 총용량 2) 시험시설 가) 간이증류기 나) 주정계	3kl 이상 2kl 이상 1대 0.2도 눈금 0~30도 1조
다. 청주	1) 담금·저장·제성용기 가) 담금(발효)조 총용량 나) 저장 및 검정조 총용량 2) 시험시설 가) 현미경 나) 향온향습기 다) 간이증류기 라) 무균상자	6kl 이상 7.2kl 이상 500배 이상 1대 0~65℃ 1대 1대 1대
라. 맥주	1) 담금·저장·제성용기 가) 용기 총용량 (1) 전발효조 (2) 후발효조(저장조) 2) 시험시설 가) 현미경 나) 향온향습기 다) 가스압측정기 라) 간이증류기	925kl 이상 1,850kl 이상 500배 이상 1대 0~65℃ 1대 1대 1대
마. 과일주	1) 담금·저장·제성용기 가) 담금(발효)조 총용량 나) 저장 및 검정조 총용량 2) 시험시설 가) 현미경 나) 향온향습기 다) 간이증류기	21kl 이상 22.5kl 이상 500배 이상 1대 0~65℃ 1대 1대

주 류 별	시 설 구 분	시 설 기 준
바. 희석식 소주	1) 담금·저장·제성용기 가) 희석조 및 검정조 총용량 2) 시험시설 가) 현미경 나) 향온향습기 다) 간이증류기	130kl 이상 500배 이상 1대 0~65℃ 1대 1대
사. 증류식 소주	1) 담금·저장·제성용기 가) 담금(발효)조 총용량 나) 저장 및 검정조 총용량 2) 시험시설 가) 현미경 나) 향온향습기 다) 간이증류기	6kl 이상 25kl 이상 500배 이상 1대 0~65℃ 1대 1대
아. 위스키 및 브랜디	1) 담금·저장·제성용기 가) 담금(발효)조 총용량 나) 원액수성용 나무통 총용량 다) 저장 및 제성조 총용량 2) 시험시설 가) 현미경 나) 향온향습기 다) 간이증류기	7kl 이상 85kl 이상 50kl 이상 500배 이상 1대 0~65℃ 1대 1대
자. 일반증류주, 리큐르 및 기타주류	1) 담금·저장·제성용기 가) 담금(발효)조 총용량 나) 저장, 침출, 제성조 총용량 2) 시험시설 가) 현미경 나) 향온향습기 다) 간이증류기	6kl 이상 25kl 이상 500배 이상 1대 0~65℃ 1대 1대

* 자료: 주세법 시행령

<참고 3> 소규모맥주제조자의 제조장 시설기준

시 설 구 분	시 설 기 준
1) 담금·제성·저장용기 가) 당화·여과·자비조 등 나) 담금 및 저장조	0.5kl~2.5kl 5kl~25kl
2) 시험시설 가) 간이증류기 나) 주정계	1대 0.2도 눈금(0~30도) 1조
3) 그 밖의 시설 가) 유량계	

* 주 : 소규모맥주제조자는 제조장과 영업장을 배관시설로 연결[제조장과 영업장이 연결(連接)한 경우만을 말한다]하여야 한다.

<참고 4> 소규모 맥주제조장 현황 : 지역별 면허 현황

서울	인천·경기	강원	대전·충남북	광주·전남	전북	대구·경북	부산·경남
18	13	1	4	7	2	12	20

* 주 : 연도별 면허수: 112 (2005) → 100 (2006) → 93 (2007) → 88 (2008) → 77 (2009)

* 자료 : 국세청

<참고 5> 주류 제조면허 추이('09.12.31. 현재)

(단위 : 개)

주종	연도	1980	1990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합	계	1,564	1,433	1,295	1,421	1,405	1,424	1,467	1,504
주	정	17	13	12	10	10	11	11	11
탁	주	1,461	1,321	992	813	782	778	780	768
약	주	30	30	111	164	177	180	190	184
청	주	4	3	3	6	5	6	6	6
백주	일 반	5	7	7	6	6	6	6	6
	소규모	-	-	-	112	100	93	88	77
과	실 주	10	9	25	84	82	131	142	167
증류식소주		-	2	14	21	24	27	29	35
희석식소주		11	10	17	17	17	17	17	17
위 스 키		5	3	5	8	7	8	8	10
브 랜 디		1	1	3	5	5	5	5	5
일반증류주		-	-	27	34	37	42	52	55
리 큐 르		-	-	72	96	88	89	89	89
기 타 주 류		20	34	7	45	65	31	44	74

* 자료 : 국세청

〈참 고 문 헌〉

- 한국주류연구원, “주요 국가들의 주세 및 주류행정체계”, 2008.8.
- _____, “주류소비시장의 현황”, 2007.12.
- 서현수, “한국의 주류정책체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2003.12.
- 한국주류산업협회, “주류산업 2008년 봄호”, 2008.3.
- _____, “주류산업 2009년 신년호”, 2009.1.
- _____, “주류산업 2009년 여름호”, 2009.6.
- 한국신용평가정보, “Indusrty Report - 주류산업”, 2009.6.
- _____, “Indusrty Report - 주정산업”, 2009.9.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정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장기 발전방향 연구”, 2006.12.
- 한국조세연구원,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주세 및 주류행정에 대한 고찰”, 2007.11.
- 농촌경제연구원, “주류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2002. 3.
- 한국소비자원, “「맥주의 표시개선」 사업 결과”, 2007.9.
- 한국기업평가, “산업별 신용평가 - 주류”, 2009.6.
- 정헌배, “외국의 농사 및 소규모 주류생산자 지원제도와 시사점”, 2004.12.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통주 국내외 산업현황 및 세계화 가능성 조사”, 2009.9.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우리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2009.7.
- 국세청, “한눈에 보는 국세통계”, 2009.2.
- 미래농정연구원, “우리나라 전통주의 일본시장 진출방안 연구”, 2004.1.

주류산업과 경쟁정책

인 쇄 : 2010년 8월

발 행 : 2010년 8월

발행인 : 정 호 열

발행처 : 공정거래위원회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반포로 648

인 쇄 : 문중인쇄(주) / 02) 503-7764

* 본 내용에 관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정책관 시장구조개선과(전화: 2023-4266
FAX: 2023-4271)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간행물판매센터 판매가격 5,000원